



[별첨]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2023. 6.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1.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법원장 등 145명
응답자 수	55명(37.9%)

2. 법원장 등 제외 전체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법원장 등 제외 전체법관 2968명
응답자 수	800명(26.95%)

3.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 28021명
설문기간	2023. 4. 28. ~ 2023. 5. 3.
응답자 수	242명(0.86%)



별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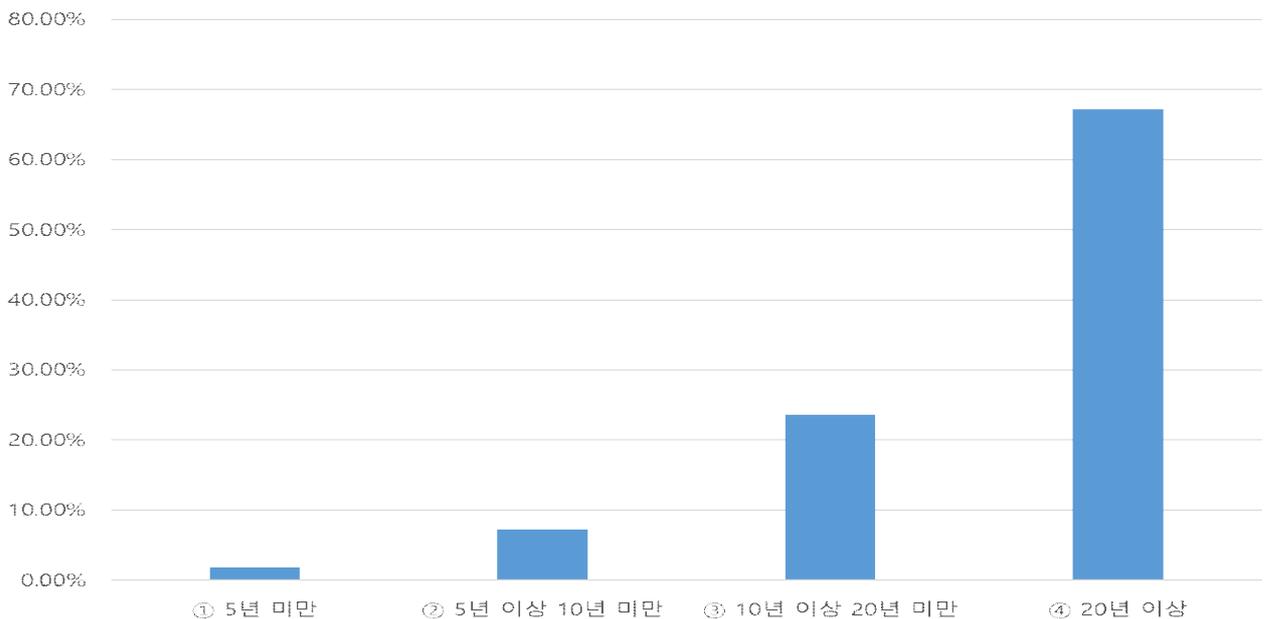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법원장 등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법원장 등 ¹⁾ 145명
응답자 수	55명(37.9%)

■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

1. 귀하의 재직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재직기간 5년 미만 (1, 1.81%)
- ②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4, 7.27%)
- ③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3, 23.63%)
- ④ 재직기간 20년 이상 (37, 6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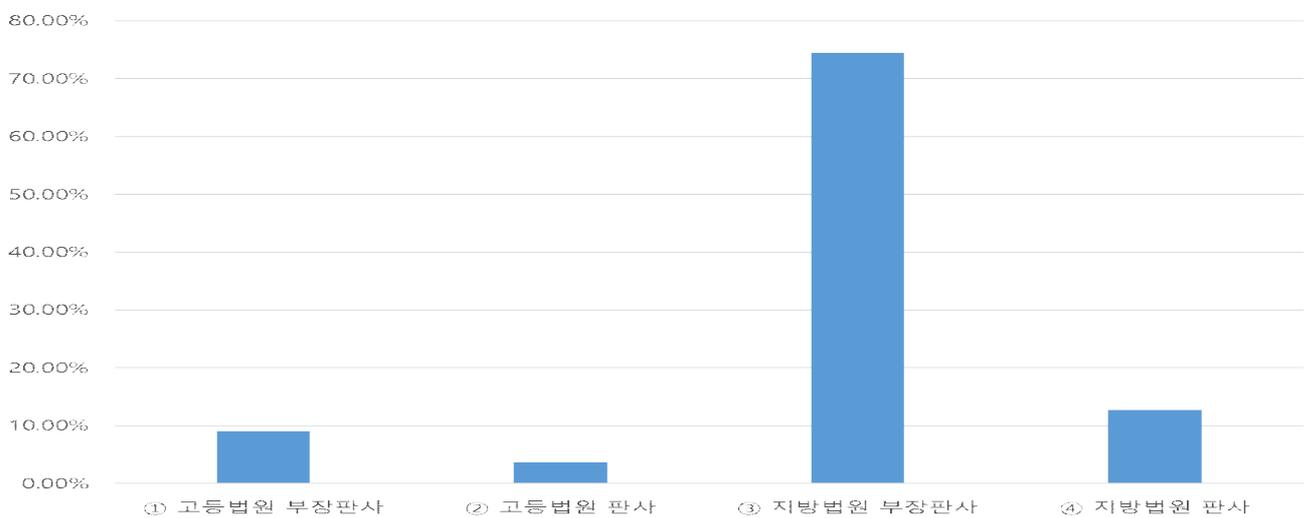


1) 법원장(지원장 포함), 수석부장판사, 행정지원법관



2.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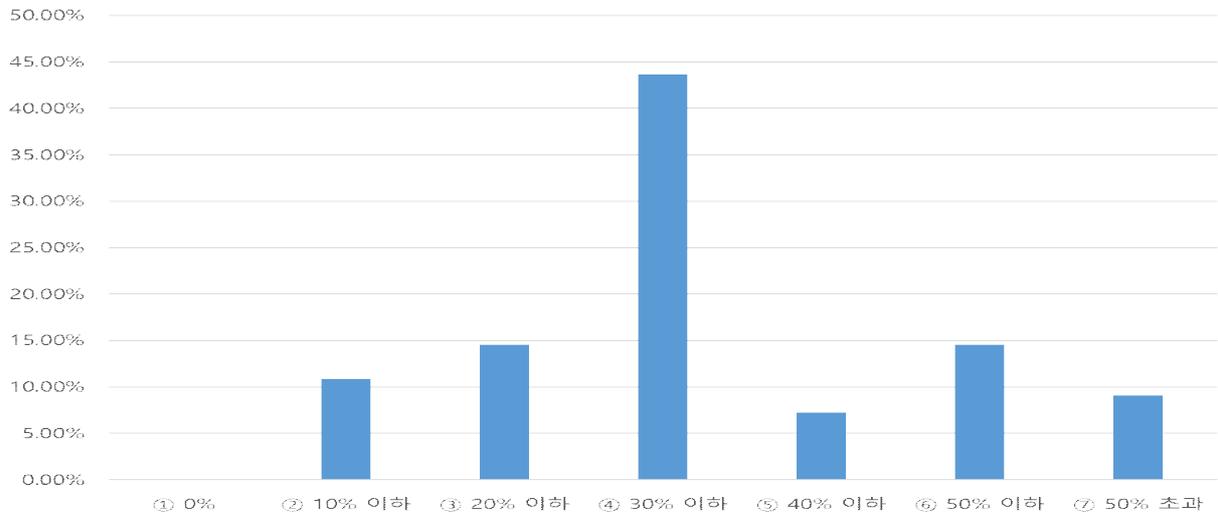
- ① 고등법원 부장판사 (5, 9.09%)
- ② 고등법원 판사 (2, 3.63%)
- ③ 지방법원 부장판사 (41, 74.54%)
- ④ 지방법원 판사 (7, 12.72%)



3. 재직기간 중 형사재판업무*를 담당한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형사재판업무: 형사합의, 형사단독, 고정 전담, 영장 전담

- ① 0% (0, 0%)
- ② 10% 이하 (6, 10.90%)
- ③ 20% 이하 (8, 14.54%)
- ④ 30% 이하 (24, 43.63%)
- ⑤ 40% 이하 (4, 7.27%)
- ⑥ 50% 이하 (8, 14.54%)
- ⑦ 50% 초과 (5, 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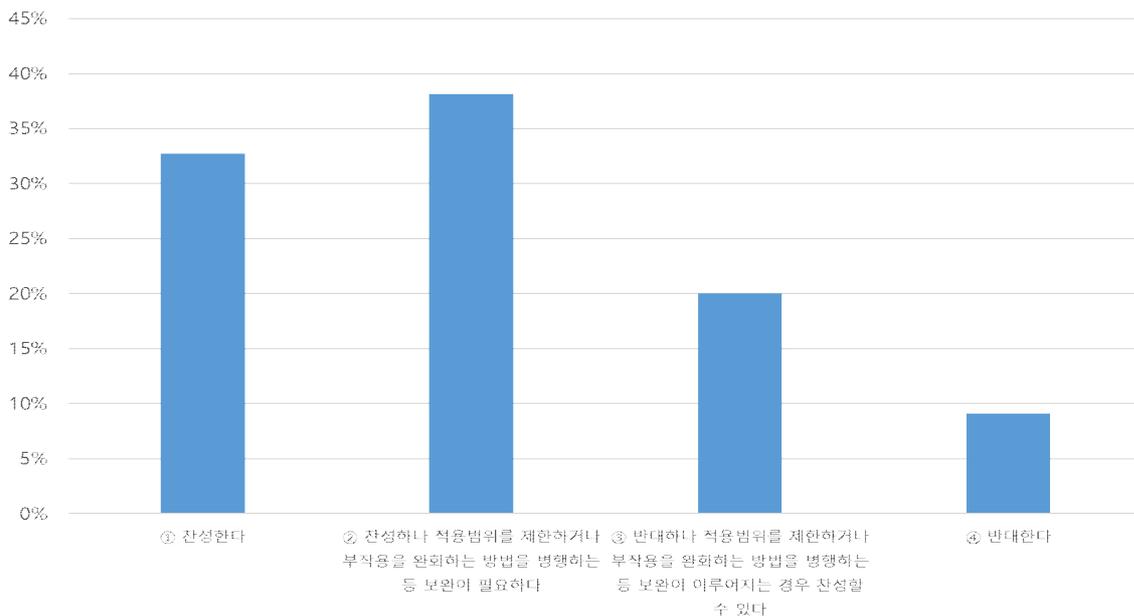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일반 사항

4. 1998년 인사제도개편위원회 등을 거쳐 사무분담 2년 원칙을 설정한 이래 신속한 재판, 충실한 심리, 법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사무분담기간을 현재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사무분담기간을 현행**(재판장 2년, 재판장인 아닌 법관 1년)보다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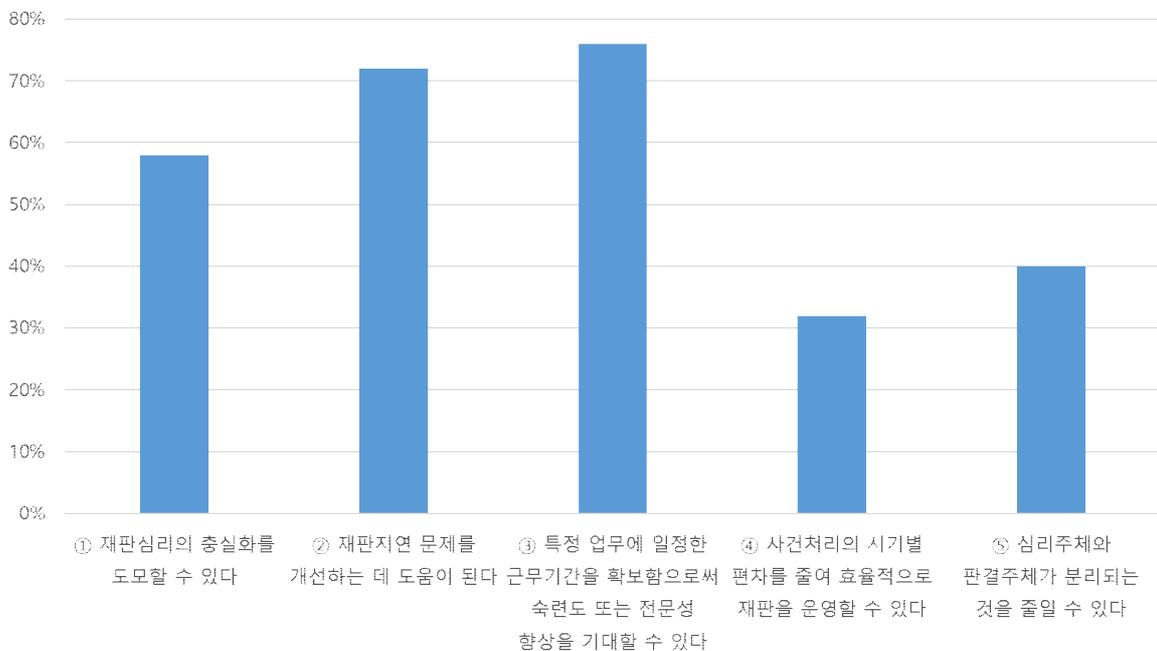
- ① 찬성한다 (18, 32.72%)
- ② 찬성하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21, 38.18%)
- ③ 반대하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1, 20%)
- ④ 반대한다 (5, 9.09%)





5-1. (4번 문항의 ‘①, ②, ③’항 중 하나에 답변한 경우)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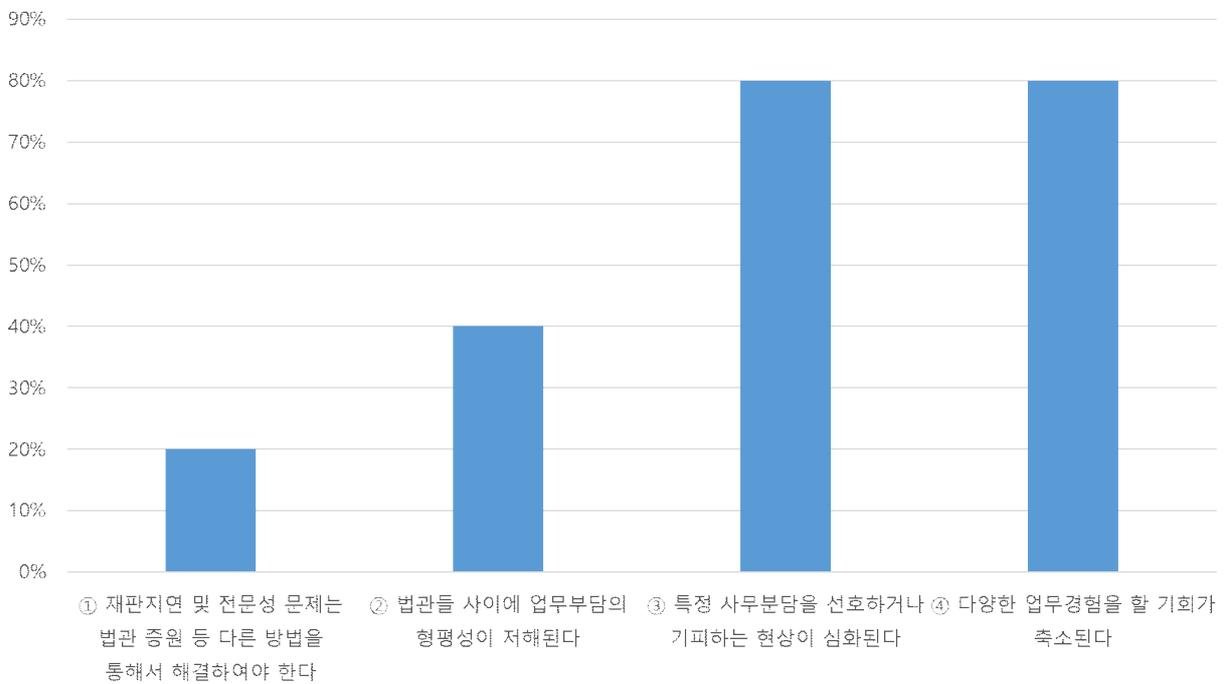
- ①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29, 58%)
- ② 재판지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36, 72%)
- ③ 특정 업무에 일정한 근무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숙련도 또는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38, 76%)
- ④ 사건처리의 시기별 편차를 줄여 효율적으로 재판을 운영할 수 있다 (16, 32%)
- ⑤ 심리주체와 판결주체가 분리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20, 40%)





5-2. (4번 문항의 ‘④’항에 답변한 경우)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재판지연 및 전문성 문제는 법관 증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1, 20%)
- ② 법관들 사이에 업무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된다 (2, 40%)
- ③ 특정 사무분담을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된다 (4, 80%)
- ④ 다양한 업무경험을 할 기회가 축소된다 (4,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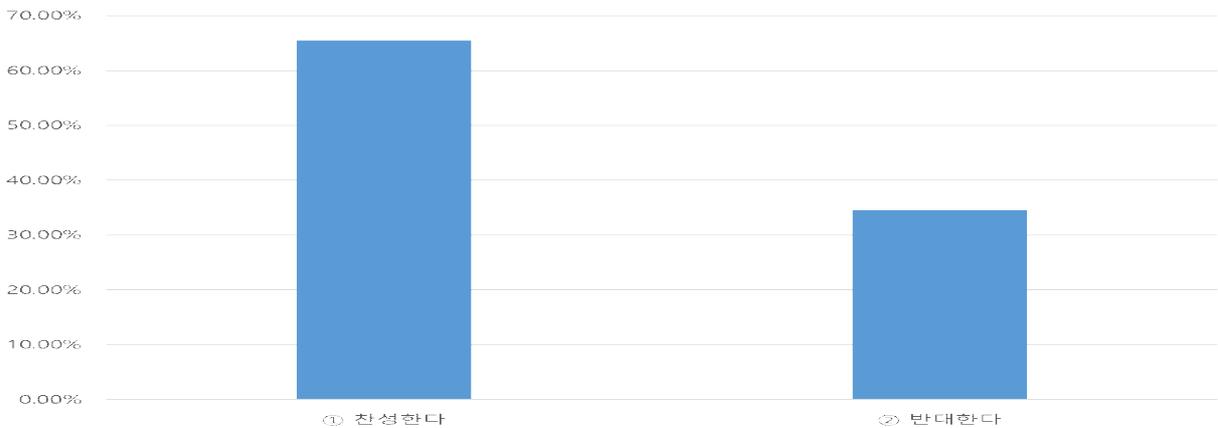
■ 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6. 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 할 경우, **본안재판장***에 대하여 **3년을 상한****으로 **1개의 근무법원에서는 1개의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본안재판장: 민·형사합의부 재판장, 중액·고액 민사단독재판장, 정식재판청구사건(고정 사건) 전담부를 제외한 형사단독재판장, 전문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가사·행정합의부 재판장, 가사·행정 단독 재판장 등
따라서 영장 전담,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고정전담), 소액, 신청합의, 신청단독, 비송, 회생파산 재판부 등은 적용 제외

**3년 상한: 2년 근무법원에서는 사무분담기간 2년, 4년 이상 근무법원에서는 3년+1년 또는 3+2년의 방식 등으로 운영

- ① 찬성한다 (36, 65.45%)
- ② 반대한다 (19, 34.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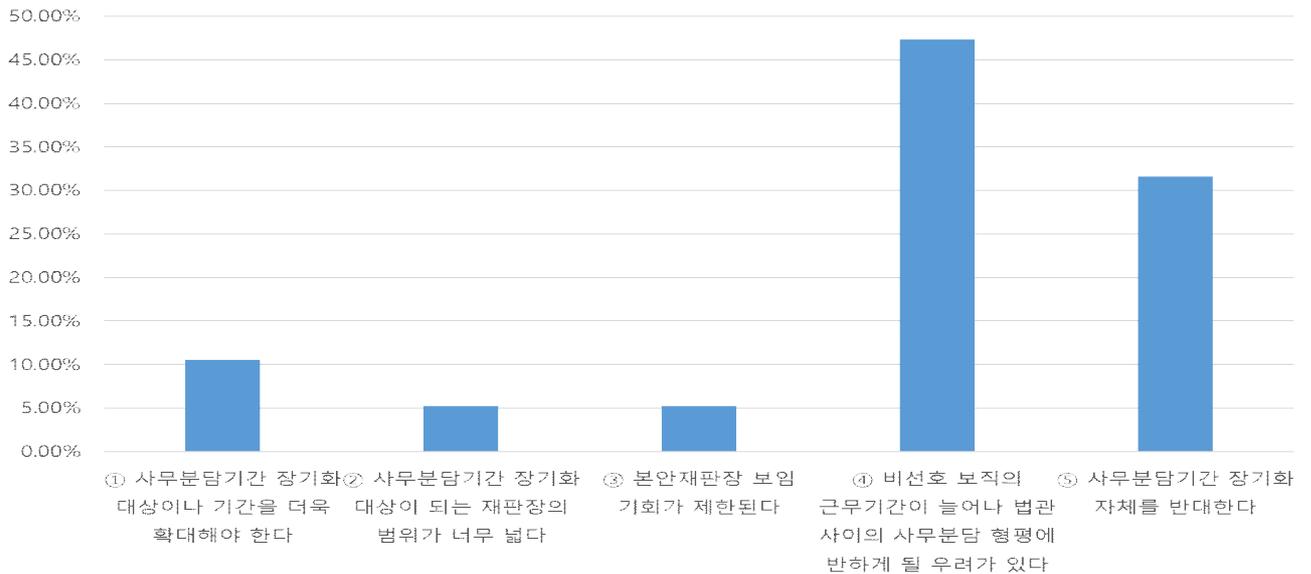


7. (6번 문항의 ‘②’항에 답변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대상이나 기간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2, 10.52%)
- ②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대상이 되는 재판장의 범위가 너무 넓다 (1, 5.26%)
- ③ 본안재판장 보임 기회가 제한된다 (1, 5.26%)
- ④ 비선호 보직의 근무기간이 늘어나 법관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9, 4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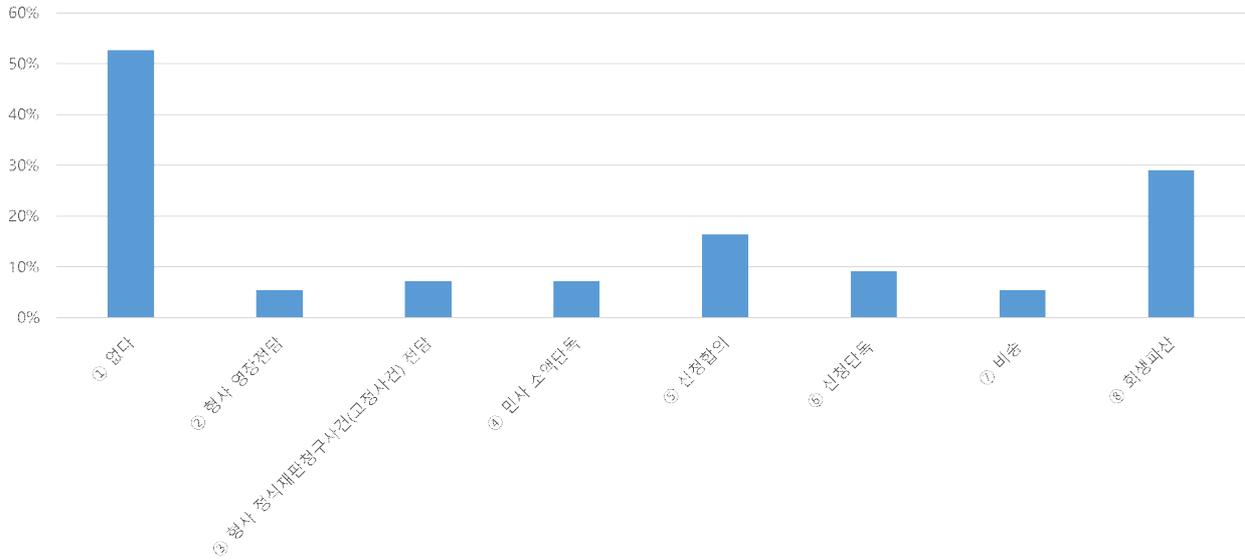
⑤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반대한다 (6, 31.57%)



기타 의견	
1	인사는 행정처에서 이루어지고 사무분담은 법원장이 하는 현 시스템 하에서 전 근무지까지 고려하여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법원장 추천제를 실시하는 이상 전국 법원을 기준으로 이전의 사무분담까지 고려하여 사무분담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법원장 추천제를 비롯한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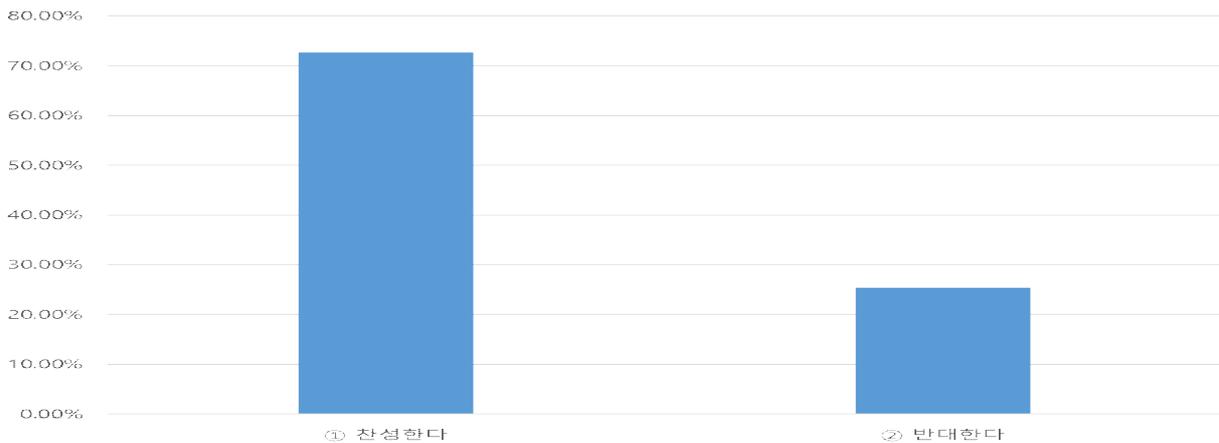
8. 아래의 각 항목은 사건 및 업무의 성격상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무분담에 해당합니다. 6번 문항에서 살핀 ‘재판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있다면 아래 각 항목 중 추가하고 싶은 사무분담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없다 (29, 52.72%)
- ② 형사 영장전담 (3, 5.45%)
- ③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고정사건) 전담 (4, 7.27%)
- ④ 민사 소액단독 (4, 7.27%)
- ⑤ 신청합의 (9, 16.36%)
- ⑥ 신청단독 (5, 9.09%)
- ⑦ 비송 (3, 5.45%)
- ⑧ 회생파산 (16, 29.09%)



9. 소액단독 재판부를 제외한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40, 72.72%)
- ② 반대한다 (14, 2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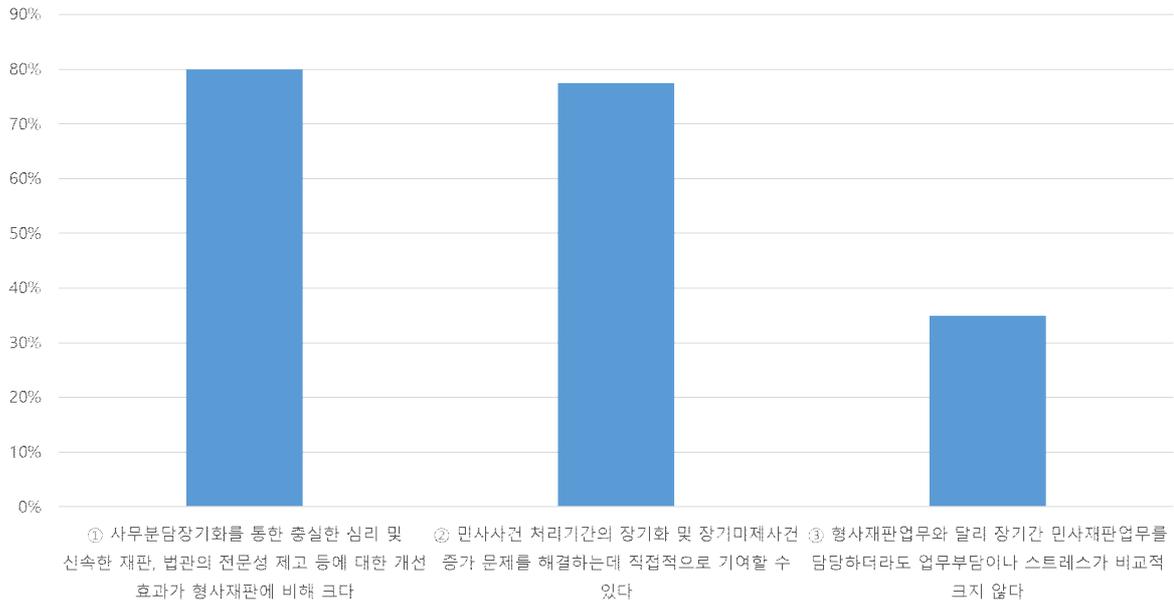
10-1. (9번 문항의 ‘①’항에 답변한 경우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 ① 사무분담장기화를 통한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한 재판, 법관의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개선 효과가 형사재판에 비해 크다. (32, 80%)
- ②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및 장기미제사건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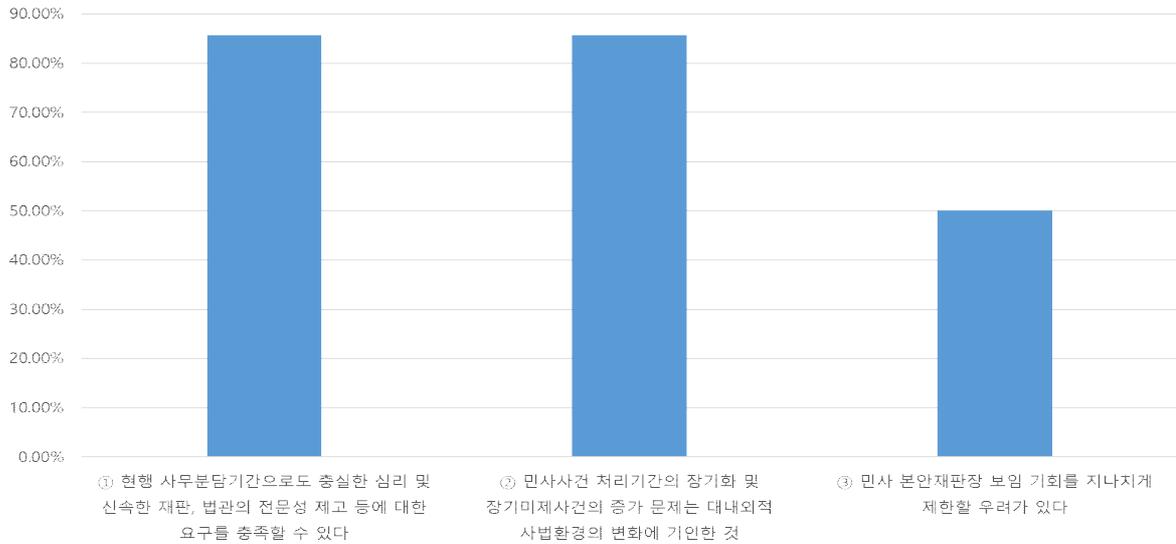
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31, 77.50%)

- ③ 형사재판업무와 달리 장기간 민사재판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비교적 크지 않다. (1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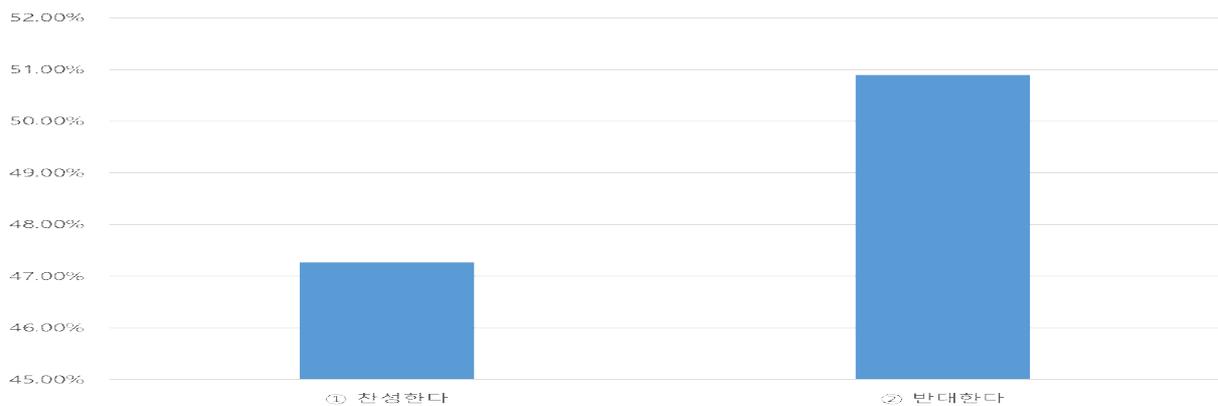
10-2. (9번 문항의 ‘②’항에 답변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 ① 현행 사무분담기간으로도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한 재판, 법관의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12, 85.71%)
- ②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및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문제는 대내외적 사법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 재판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12, 85.71%)
- ③ 민사 본안재판장 보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7, 50%)



11. 정식재판청구사건(고정사건) 전담부를 제외한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26, 47.27%)
- ② 반대한다 (28, 5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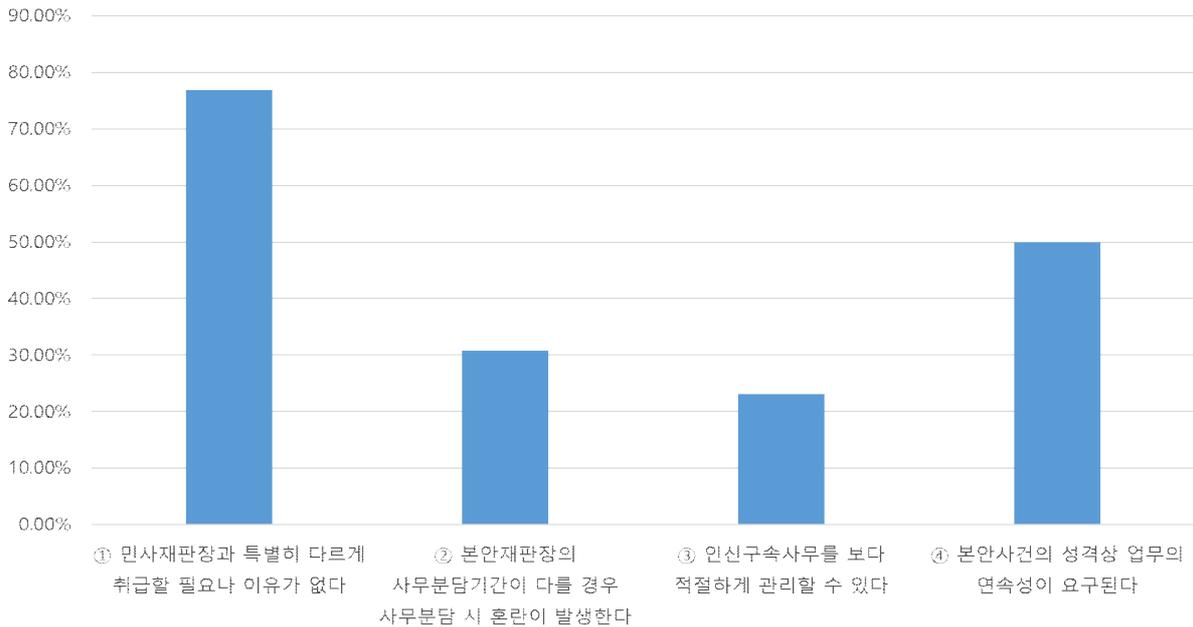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고정사건도 포함해서 장기화 대상으로 삼아야

12-1. (11번 문항의 '①'항에 답변한 경우)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 ① 민사재판장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20, 7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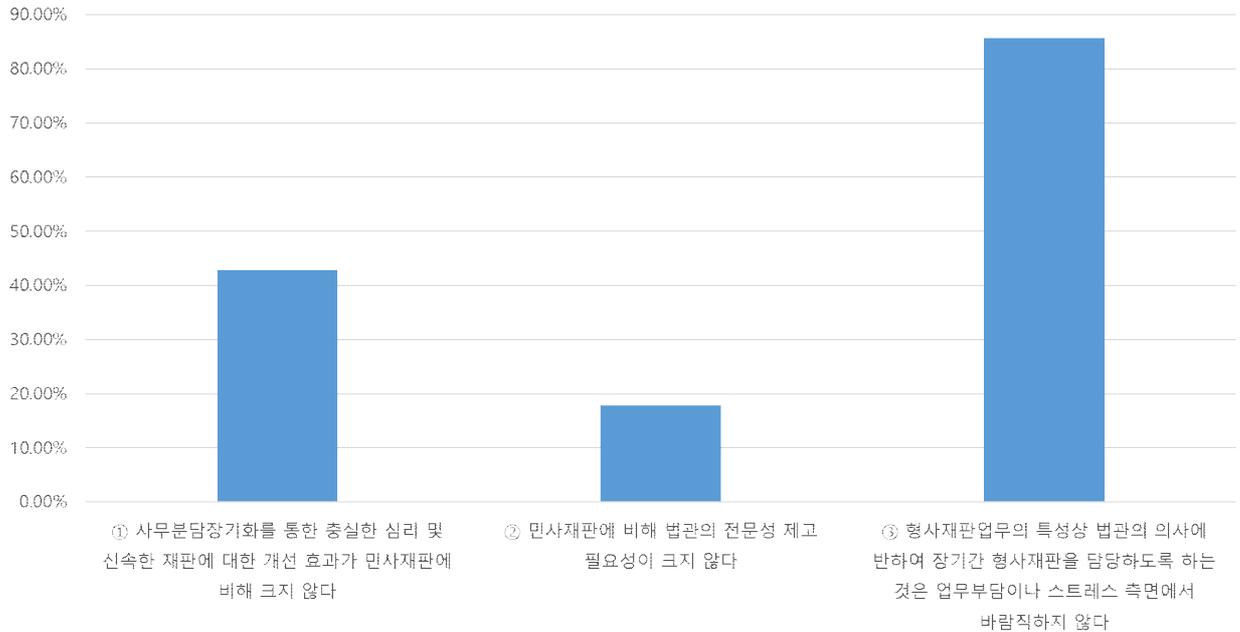


- ② 본안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이 다를 경우 사무분담 시 혼란이 발생한다 (8, 30.76%)
- ③ 인신구속사무를 보다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다 (6, 23.07%)
- ④ 본안사건의 성격상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13, 50%)



12-2. (11번 문항의 '②'항에 답변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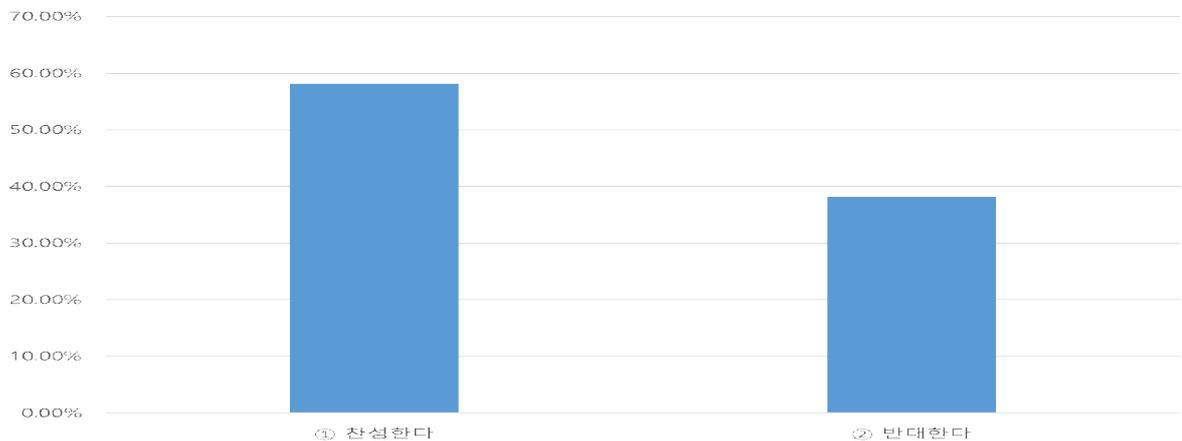
- ① 사무분담장기화를 통한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한 재판에 대한 개선 효과가 민사재판에 비해 크지 않다. (12, 42.85%)
- ② 민사재판에 비해 법관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크지 않다 (5, 17.85%)
- ③ 형사재판업무의 특성상 법관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4, 85.71%)



기타 의견	
1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현재처럼 형사부 기피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보완책 없이 형사부 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만 장기화한다면 형사부 기피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고, 일선 법원장들의 인사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보완책 없이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함

13. 경력대등재판부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32, 58.18%)
- ② 반대한다 (21, 3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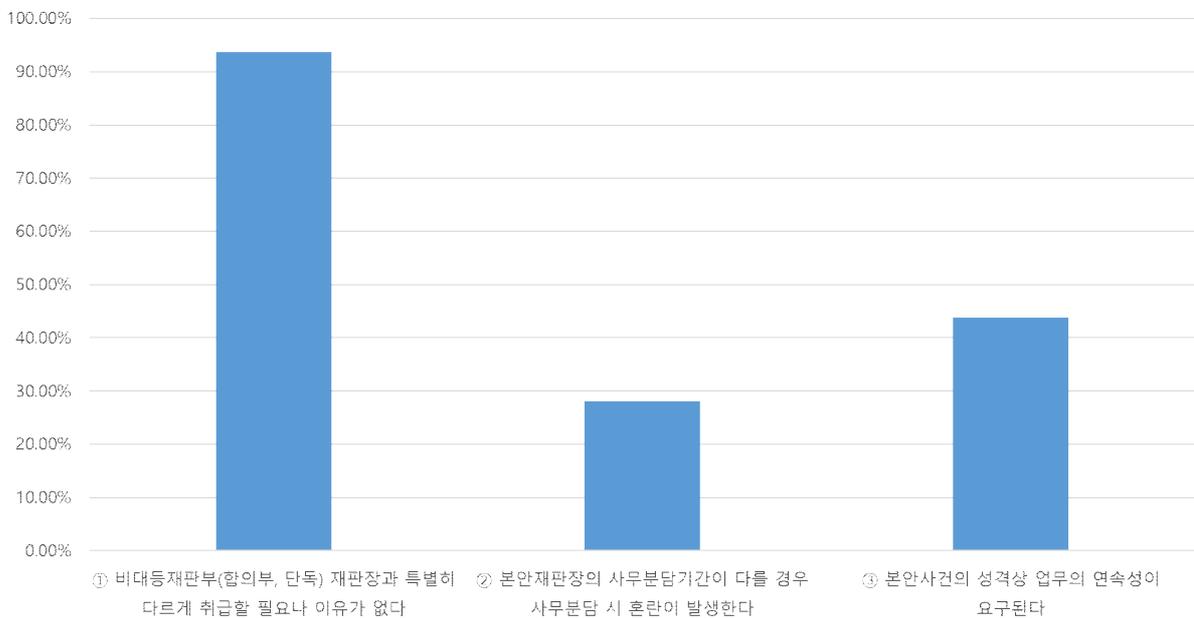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장기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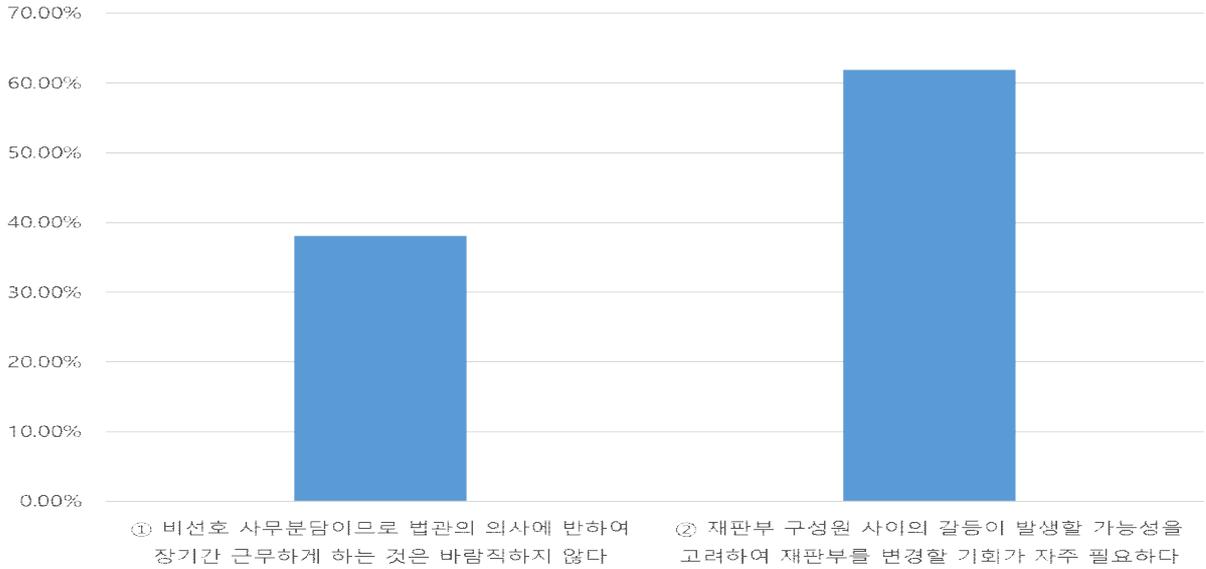
14-1. (13번 문항의 '①'항에 답변한 경우)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 ① 비대등재판부(합의부, 단독) 재판장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30, 93.75%)
- ② 본안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이 다를 경우 사무분담 시 혼란이 발생한다 (9, 28.12%)
- ③ 본안사건의 성격상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14, 43.75%)



14-2. (13번 문항의 '②'항에 답변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 ① 비선호 사무분담이므로 법관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8, 38.09%)
- ②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판부를 변경할 기회가 자주 필요하다 (13, 6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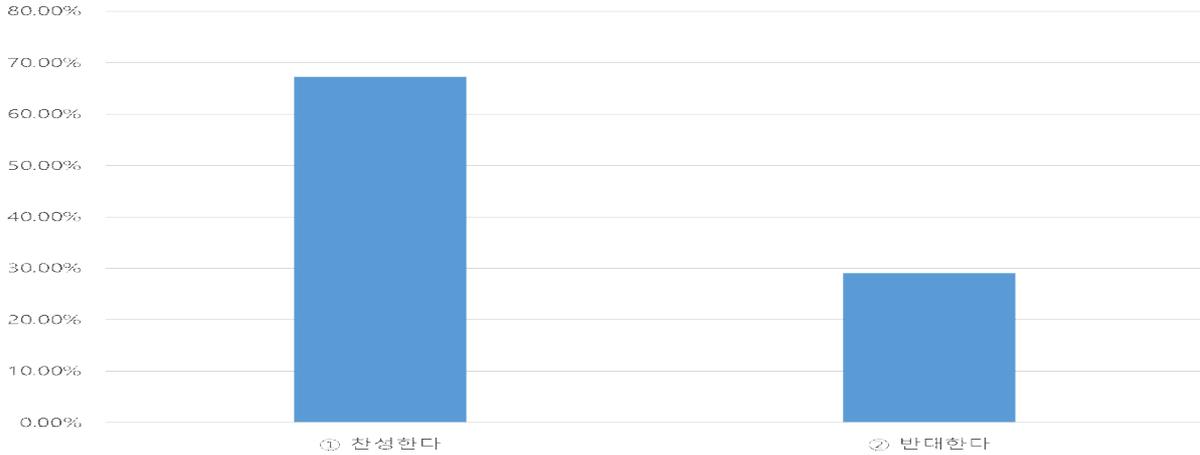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반대한다
2	특별히 장기화할 필요성을 모르겠다
3	부장관사들에게 경력대등재판부를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베네핏이 없는 상태에서, 일선 법원에서 인사안을 짜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음. 결국 주심과 재판장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재판부가 늘어나고 있고, 이는 대등부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애초에 대등부라는 제도 자체가 좋은 재판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함에서 나온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히 대전지방법원의 경우 부장관사들의 반발 때문인지 경력대등재판부가 민사항소부에서만 3개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운영실태가 향후 대등재판부의 확대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특정 선호 사무분담에 대하여만 경력대등재판부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임.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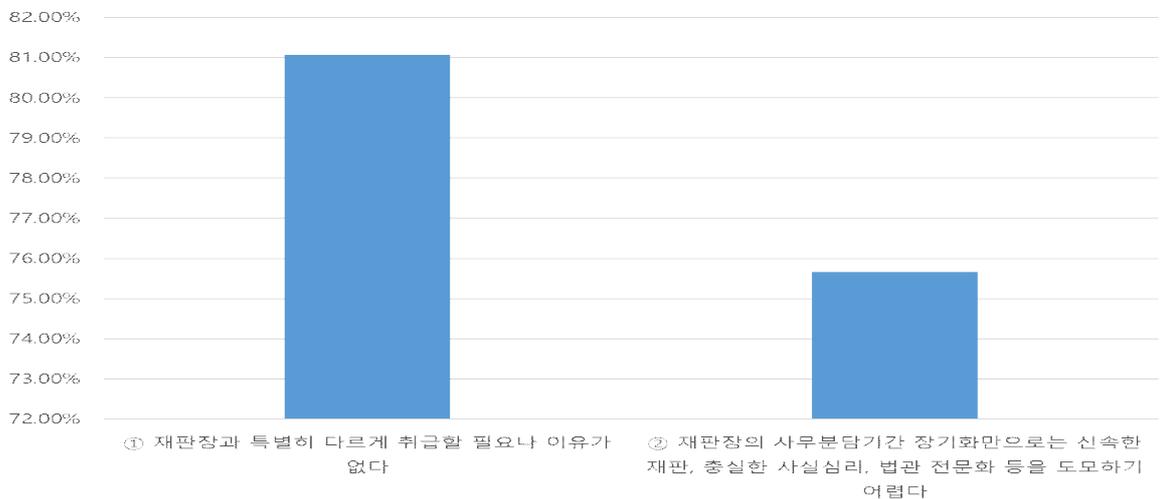
15.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37, 67.27%)
- ② 반대한다 (16, 29.09%)



16-1. (15번 문항의 '①'항에 답변한 경우)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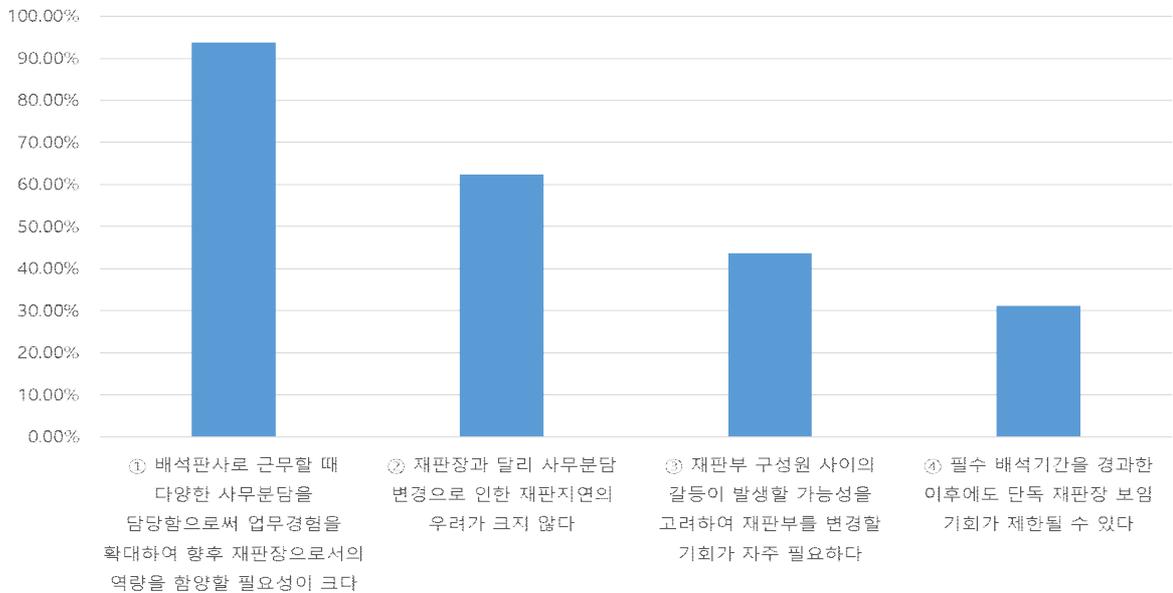
- ① 재판장과 특별히 다르게 취급할 필요나 이유가 없다 (30, 81.08%)
- ② 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만으로는 신속한 재판, 충실한 사실심리, 법관 전문화 등을 도모하기 어렵다 (28, 7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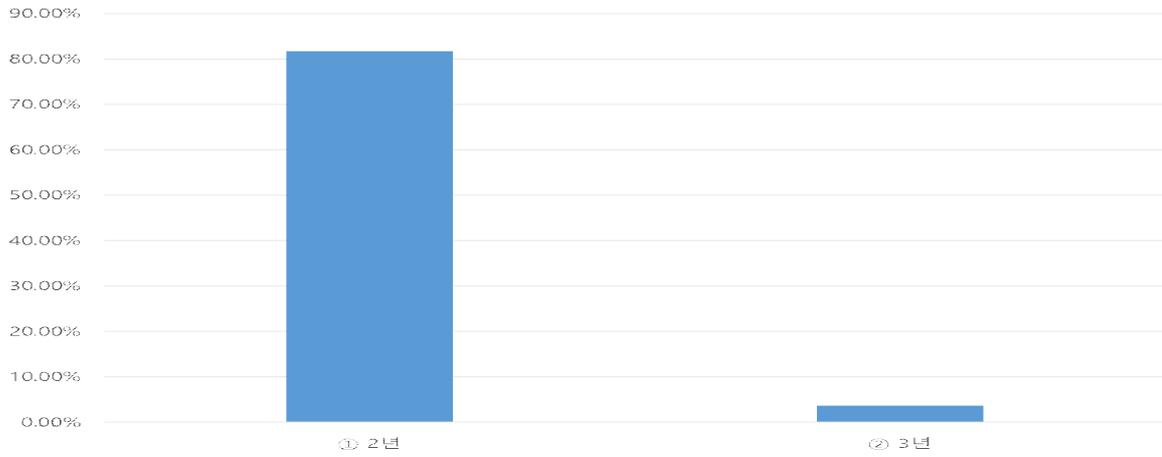
16-2. (15번 문항의 ‘②’항에 답변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 ① 배석판사로 근무할 때 다양한 사무분담을 담당함으로써 업무경험을 확대하여 향후 재판장으로서의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크다 (15, 93.75%)
- ② 재판장과 달리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재판지연의 우려가 크지 않다 (10, 62.50%)
- ③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판부를 변경할 기회가 자주 필요하다 (7, 43.75%)
- ④ 필수 배석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단독 재판장 보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5, 31.25%)



17.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할 경우 몇 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년 (45, 81.81%)
- ② 3년 (2,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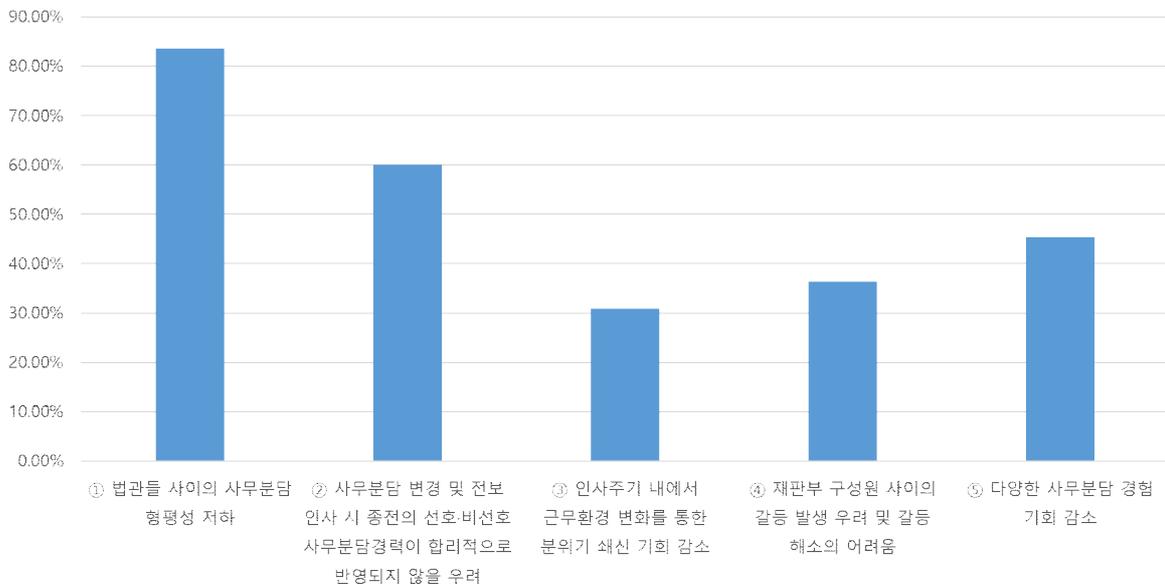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현행 1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2	1년 단위 변경 원칙에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최대한 2년은 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
3	장기화에 반대한다
4	장기화 반대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18. 사무분담기간을 현행보다 장기화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성 저하 (46, 83.63%)
- ② 사무분담 변경 및 전보 인사 시 종전의 선호·비선호 사무분담경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 (33, 60%)
- ③ 인사주기 내에서 근무환경 변화를 통한 분위기 쇄신 기회 감소 (17, 30.90%)
- ④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 발생 우려 및 갈등 해소의 어려움 (20, 36.36%)
- ⑤ 다양한 사무분담 경험 기회 감소 (25, 4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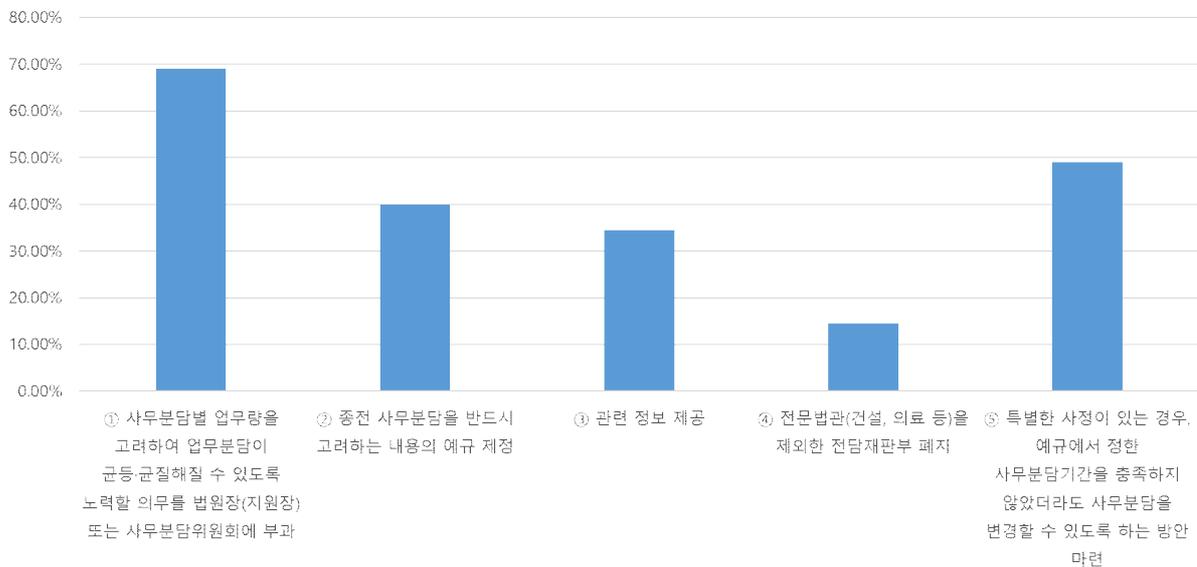


19.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려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사무분담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재판부를 증설·폐부하는 등 업무분담이 균등·균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원장(지원장) 또는 사무분담위원회에 부과 (38, 69.09%)
- ② 종전 사무분담을 반드시 고려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22, 40%)



- ③ ‘인사희망원’ 제출 전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별 예상 공석(해당 연도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 되는 보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사발령 후 ‘사무분담희망원’ 제출 전 전입법원의 예상 공석(해당 연도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 되는 보직)에 대한 정보 제공 (19, 34.54%)
- ④ 사무분담별 업무 균질화를 위하여 전문법관(건설, 의료 등)을 제외한 전담 재판부 폐지 (8, 14.54%)
- ⑤ 사무분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규에서 정한 사무분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27, 49.09%)



20. 위 19항 기재 답변 외에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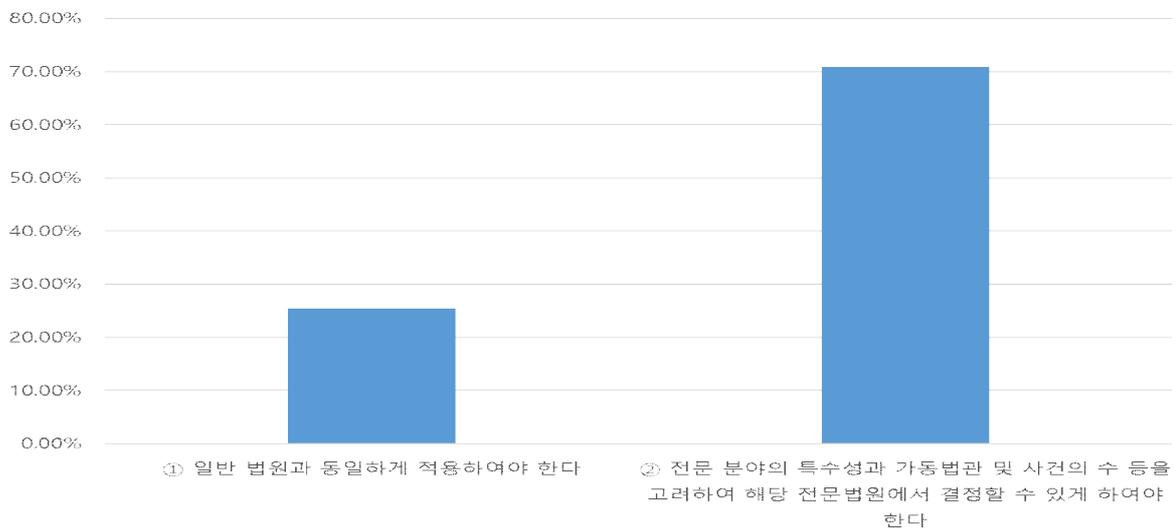
의견	
1	형사재판부 등 비선호보직에 대하여는 그에 합당한 보상책(특별수당 지급 등)이 필요함
2	성과급 비율을 선호재판부와 비선호 재판부 사이에 현저한 차등을 두되, 구체적인 비율은 각급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장(또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선호재판부와 비선호 재판부 사이에 삶의 질에 차이가 많은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게 되면 그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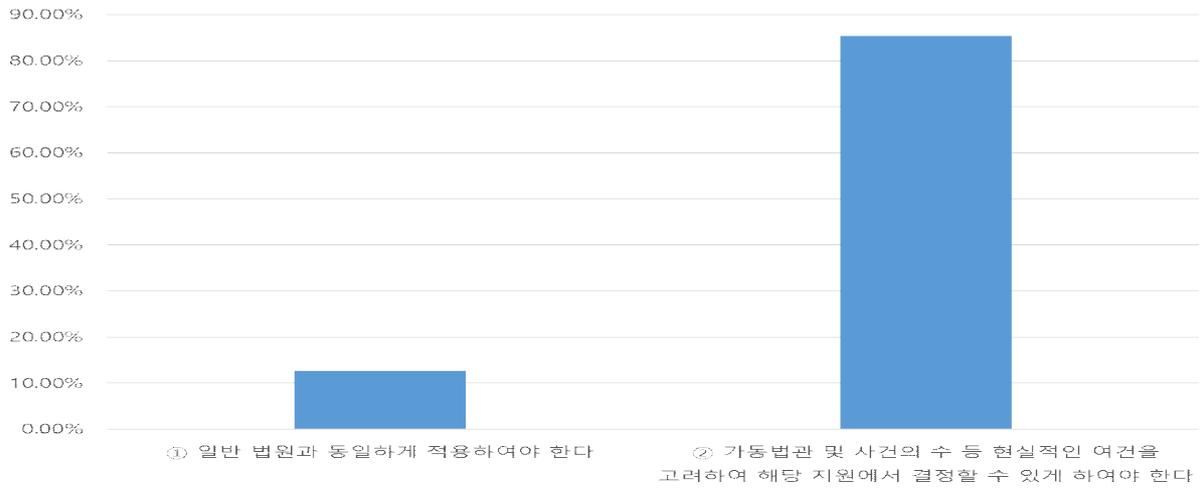
21.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경우, **전문법원**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 법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14, 25.45%)
- ② 전문 분야의 특수성과 가동법관 및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9, 7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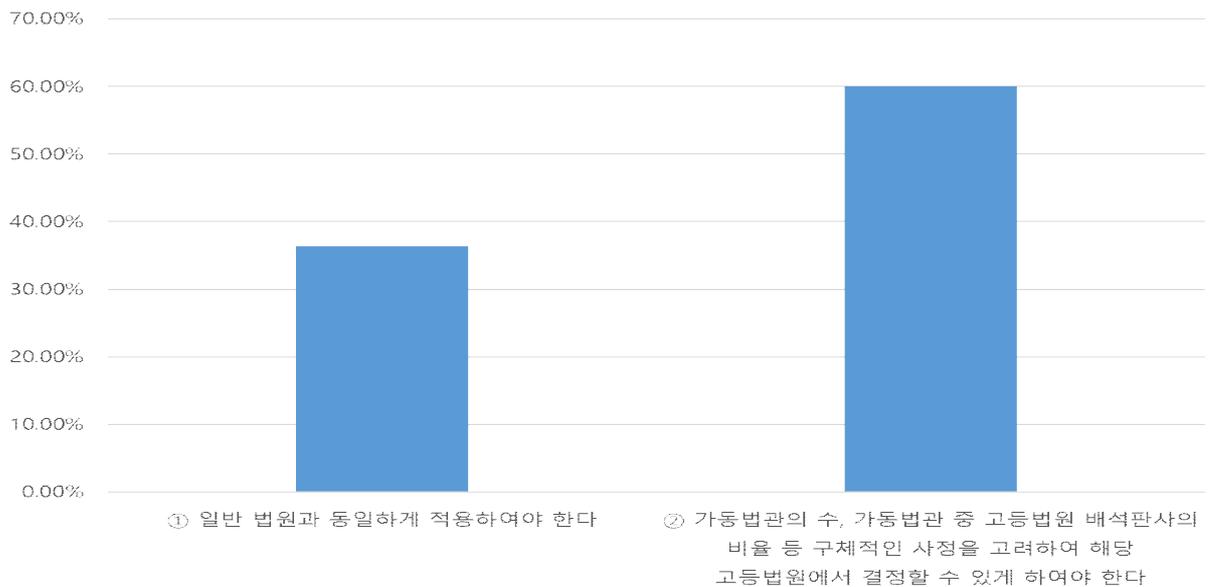
22.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경우, **10인 내외 소규모지원**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 법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7, 12.72%)
- ② 가동법관 및 사건의 수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원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7, 85.45%)



23.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경우, **고등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반 법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20, 36.36%)
- ② 가동법관의 수, 가동법관 중 고등법원 배석판사의 비율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고등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3, 60%)





24.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와 관련하여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대등재판부나 형사부 등 경합하지 않는 재판부의 경우 해당 재판부 구성원의 장기 희망 의사를 적극 존중하였으면 좋겠다
1개 법원 1개 사무분담 원칙 정립
현재 스마트워크제 실시와 관련하여 민사재판장을 선호하는 반면에 형사재판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사무분담 장기화는 형사재판장의 스마트워크제 실시가 가능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그 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장 재판장 3년을 시행한다면, 초임부장판사가 지방근무시에 민사단독, 합의, 항소부를 맡느냐, 형사단독, 합의, 항소부를 맡느냐에 따라 근무여건이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서 오히려 법관들 사이에서 사무분담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무분담 장기화의 취지에 공감하는 면이 있으나, 특히 지원의 경우에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사무분담 사이의 업무량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스마트워크의 가부 등에 따라 선호보직의 차이가 뚜렷하여, 선호, 비선호 사무분담을 각각 장기간 담당하게 된다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인사제도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분담 장기화가 가능할지 걱정이 됩니다. 법원장 추천제, 사무분담 위원회 제도, 행정처가 관리하는 전국 단위의 인사발령 시스템 등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무분담을 맡는 기간을 장기화한다면, 형사부 재판장을 과연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비인기 사무분담을 맡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베네핏이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은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위 논의가 제기된 배경이 사건처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건 적체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재판부부터 적용을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선호 사무분담을 맡게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이, 선호사무분담을 맡게 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다소의 손해가 있어야 하되, 구체적인 보상이나 손해는 각 법원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부의 경우에는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2년 정도 함께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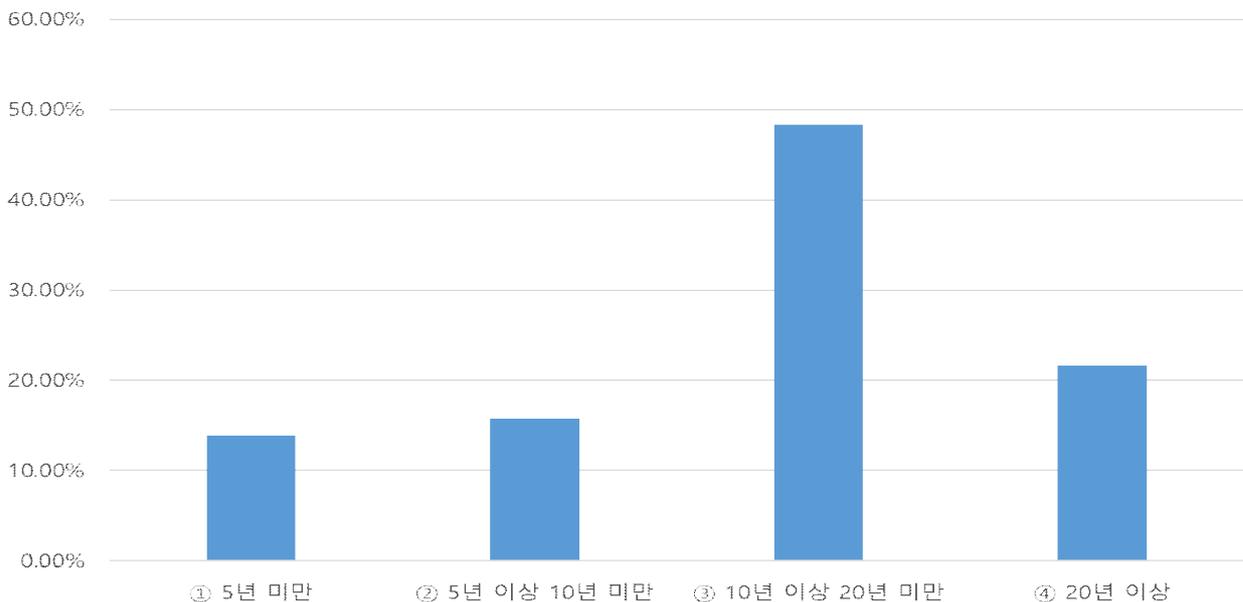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법원장 등 제외 전체법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법원장 등 제외 전체법관 ²⁾ 2968명
응답자 수	800명(26.95%)

■ 설문조사 대상자 정보

1. 귀하의 재직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재직기간 5년 미만 (111, 13.87%)
- ②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26, 15.75%)
- ③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87, 48.37%)
- ④ 재직기간 20년 이상 (173, 2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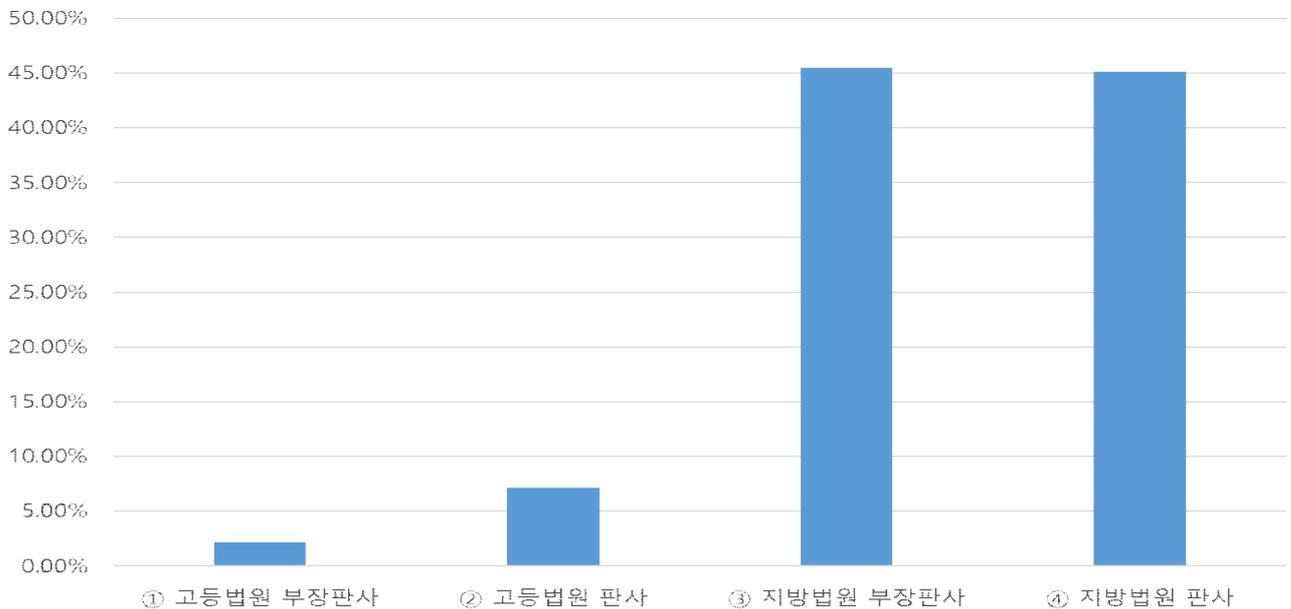


2) 법원장(지원장 포함), 수석부장판사, 행정지원법관 제외 전체법관



2.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고등법원 부장판사 (17, 2.12%)
- ② 고등법원 판사 (57, 7.12%)
- ③ 지방법원 부장판사 (364, 45.5%)
- ④ 지방법원 판사 (361, 4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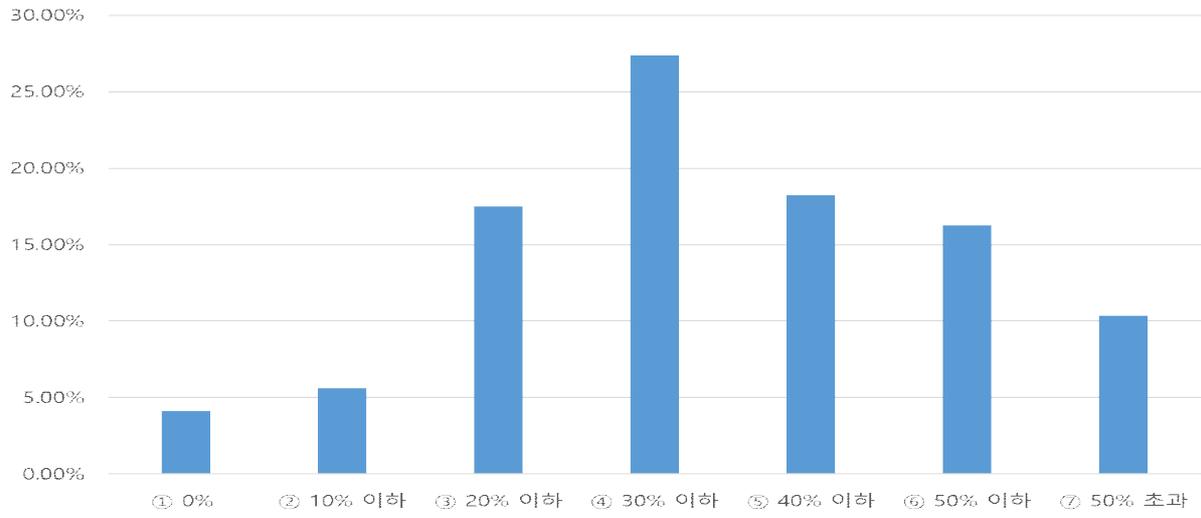
3. 재직기간 중 형사재판업무*를 담당한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형사재판업무: 형사합의, 형사단독, 고정 전담, 영장 전담

- ① 0% (33, 4.12%)
- ② 10% 이하 (45, 5.62%)
- ③ 20% 이하 (140, 17.5%)
- ④ 30% 이하 (219, 27.37%)
- ⑤ 40% 이하 (146, 18.25%)
- ⑥ 50% 이하 (130, 16.25%)
- ⑦ 50% 초과 (83, 10.37%)



형사재판업무 담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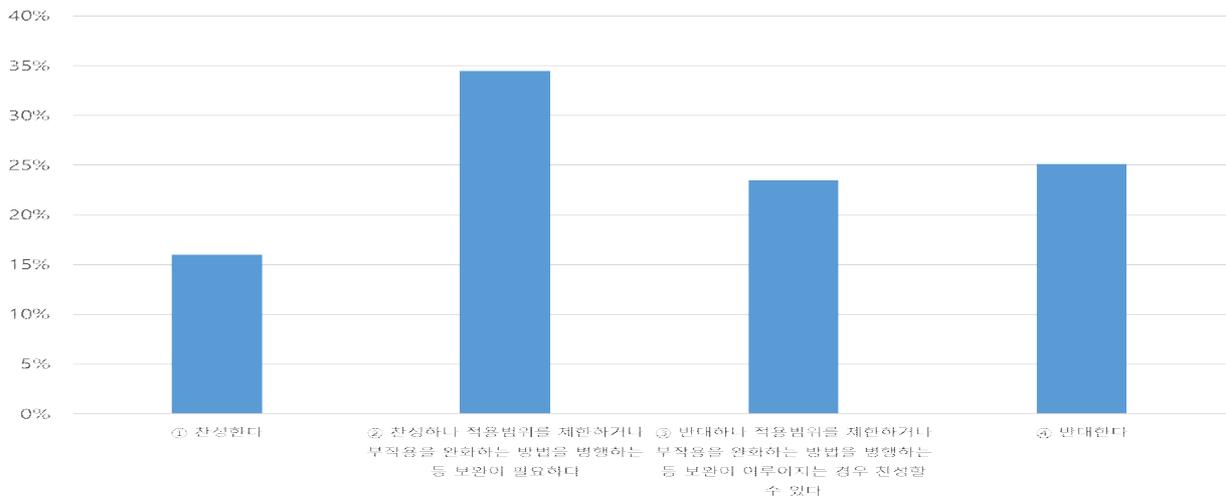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일반 사항

4. 1998년 인사제도개편위원회 등을 거쳐 사무분담 2년 원칙을 설정한 이래 신속한 재판, 충실한 심리, 법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사무분담기간을 현재보다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사무분담기간을 현행**(재판장 2년, 재판장인 아닌 법관 1년)보다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128, 16%)
- ② 찬성하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 (276, 34.5%)
- ③ 반대하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병행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88, 23.5%)
- ④ 반대한다 (201, 25.12%)



기타 의견	
1	적용범위 제한을 얼마나 한다는 것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전에는 답이 어렵다
2	원칙을 2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방안이 타당
3	사무분담을 세분화하지 않고 민사, 형사, 행정 등으로 단순화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화에 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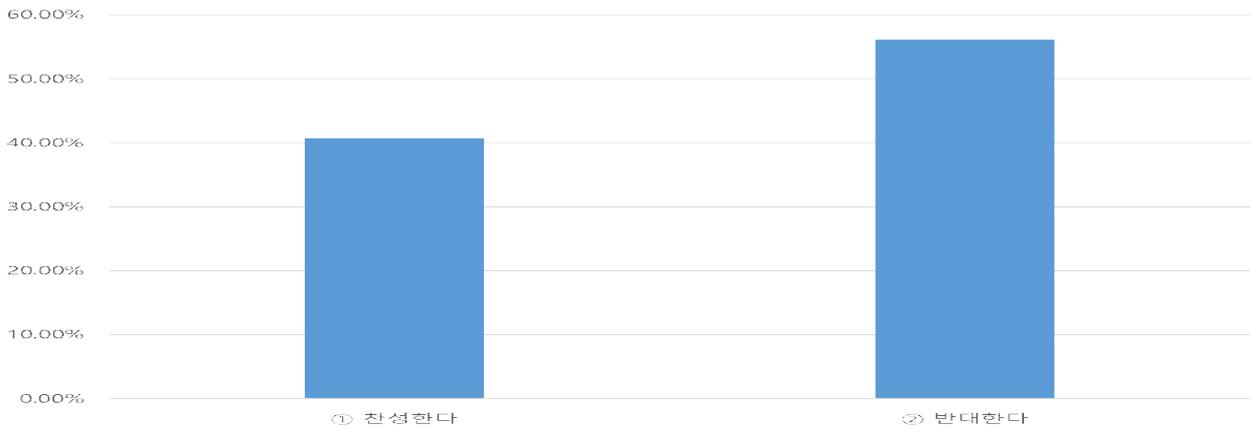
■ 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5. 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 할 경우, **본안재판장***에 대하여 **3년을 상한****으로 **1개의 근무법원에서는 1개의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는 방안에 찬성하십니까?

*본안재판장: 민·형사합의부 재판장, 중액·고액 민사단독재판장, 정식재판청구사건(고정 사건) 전담부를 제외한 형사단독재판장, 전문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의 가사·행정합의부 재판장, 가사·행정 단독 재판장 등
따라서 영장 전담,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고정전담), 소액, 신청합의, 신청단독, 비송, 회생파산 재판부 등은 적용 제외

**3년 상한: 2년 근무법원에서는 사무분담기간 2년, 4년 이상 근무법원에서는 3년+1년 또는 3+2년의 방식 등으로 운영

- ① 찬성한다 (326, 40.75%)
- ② 반대한다 (449, 56.12%)



기타 의견	
1	소액사건 역시 3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의 경우는 3년 부적절
3	본안재판장 3년 상한도 예외가 필요할 수 있고, 장기근무법관, 전문법관등은 1개 법원에서 1개사무분담 담당이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음
4	적용범위 제한을 얼마나 한다는 것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전에는 답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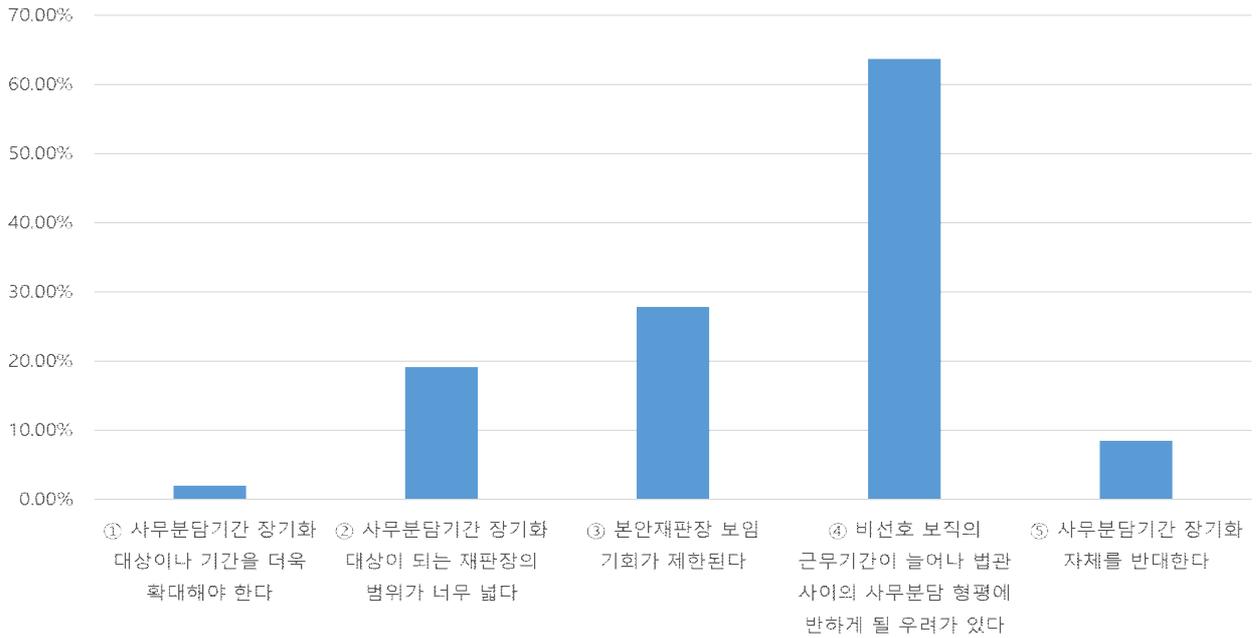
5	민사단독의 경우 찬성하나, 행정합의부 같은 경우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형사합의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선호, 비선호를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6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희망자에 한하여 위 원칙을 적용하고, 기피부서나 힘든 부서의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육체적, 정신적으로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희망자에 한하여 3년간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전반적으로 찬성하되, 일부 사무분담(형사 등 비선호보직)의 경우 반대
8	2년 이상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찬성
9	형사와 가사는 재판장이 원하는 경우에 3년으로 하고, 그 외에는 3년으로 하는데 동의 함
10	1개 근무법원(서울 및 선호 수도권)의 근무기간 장기화와 함께 시행되어야
11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년을 연장
12	현재처럼 형사재판장 기피가 심각한 상태로 3년 재판장 시행은 반대한다. 형사재판부 확충하여 민형사 균형이 이루어지는게 선행되어야 한다
13	비선호 보직에 대한 보완 없이는 반대
14	굳이 3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각 법원의 상황에 맞게 3년 이상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

6. (5번 문항의 ‘㉔’항에 답변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대상이나 기간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9, 2%)
- ②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대상이 되는 재판장의 범위가 너무 넓다 (86, 19.15%)
- ③ 본안재판장 보임 기회가 제한된다 (125, 27.83%)
- ④ 비선호 보직의 근무기간이 늘어나 법관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다 (286, 63.69%)



⑤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자체를 반대한다 (38, 8.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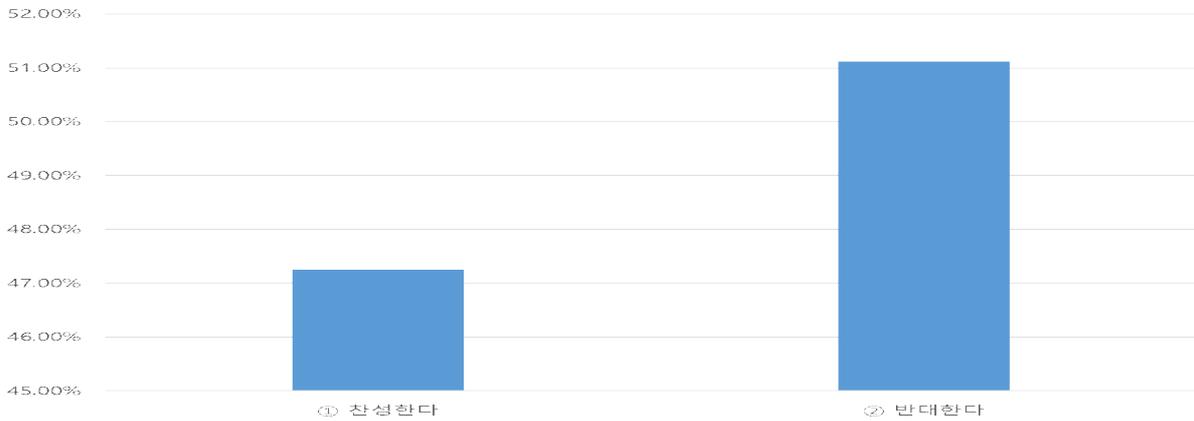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원칙이 3년이 되면, 업무처리 부진한 재판장에 대한 견제수단이 상실됨
2	종전에 선고한 것과 유사사건이 법원에 계속되는 경우에 종전 선고사건과 동일한 결론을 답습하게 됨
3	본안재판장 3년 상한도 예외가 필요할 수 있고, 장기근무법관, 전문법관등은 1개 법원에서 1개사무분담 담당이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음
4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로 맡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장기화를 하였으면 한다.
5	연차 낮은 판사들은 선호보직을 할 수가 없는데 심지어 장기화하면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
6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재판장 2년의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이 아니라 2년 동안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는 동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봄
7	현재 사무분담을 정하는 원칙 등이 법원마다 다르고, 기수나 특히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분담의 불공정이 이로 인하여 심화될 우려가 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것은 나이, 운, 자기 주장이 강한지 여부에 따라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현재의 사무분담의 불공평이 고착되고 심화될 우려가 있음
8	특수 분야에 전문성을 쌓은 법관이 회귀해지고, 그럴 경우 시장가치가 높아져서 오히려 퇴직을 유도할 수 있음. 재판장이 바뀔 경우 관점이 바뀔에 따라 오히려 사건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음. 불성실한 재판장이 장기간 근무할 경우 해당 부의 사건이 지나치게 정체됨
9	민형사 법원이 분리되지 않고, 민형사 재판부 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며, 전입전후의 민형사재판장 기간에 대한 형평성도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 상황에서,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는 근래 일반적으로 비선호 사무분담으로 분류되는 형사재판장 장기화의 부작용이 심화됨.
--	---

7. 소액단독 재판부를 제외한 **민사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378, 47.25%)
- ② 반대한다 (409, 51.12%)



기타 의견	
1	적용범위 제한을 얼마나 한다는 것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전에는 답이 어렵다
2	소액 재판부도 장기화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3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찬성
4	비선호 보직에 대한 보완 없이는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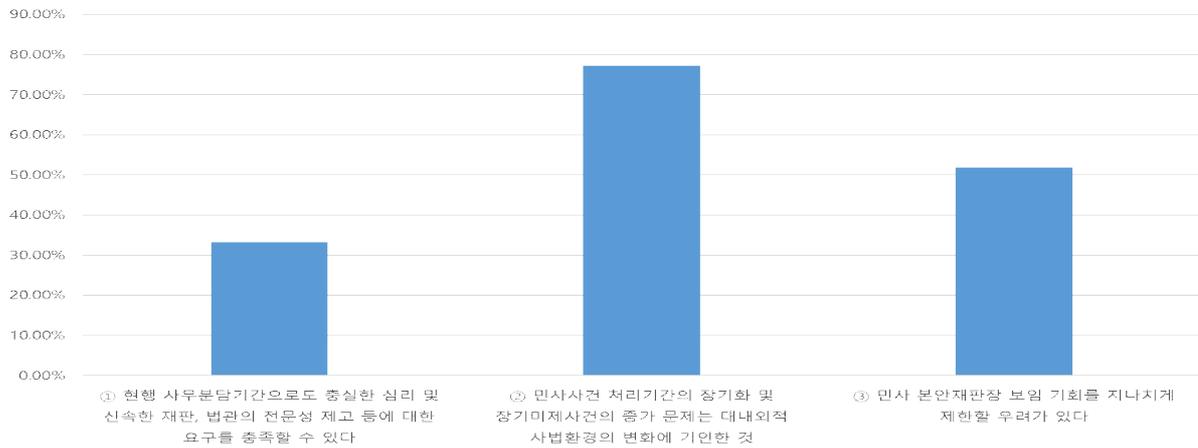
8. (7번 문항의 ‘②’항에 답변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 ① 현행 사무분담기간으로도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한 재판, 법관의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136, 33.25%)
- ②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및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문제는 대내외적 사



법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 재판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316, 77.26%)

③ 민사 본안재판장 보임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212, 5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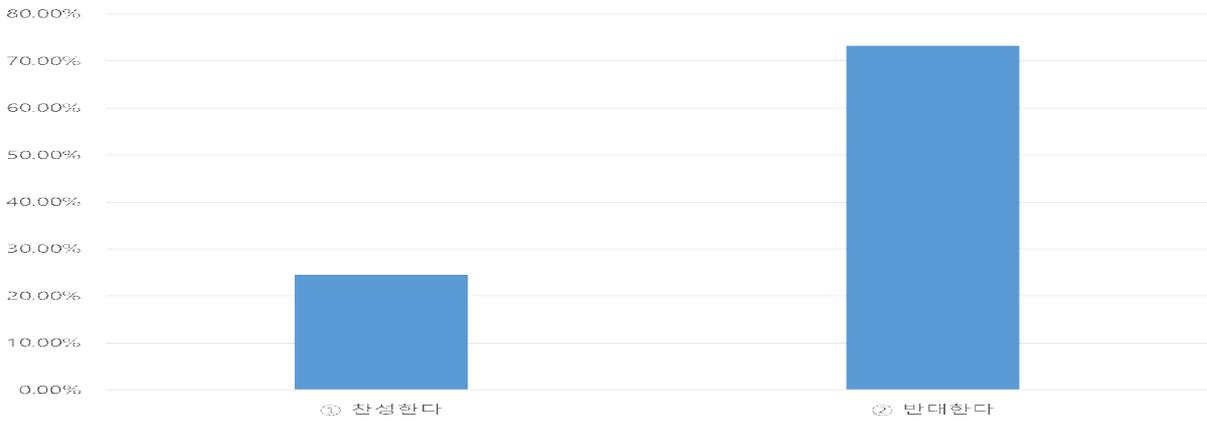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비선호하는 형사사건 재판업무를 하는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2	'장기화'는 재판장이 재판을 잘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재판장이 계속하면 더 잘할 것을 염두에 둔 것임. 그러나 재판장 보임 시 그와 같은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화 원칙을 정하면 재판자연 등의 상황에 더 대처하기 어렵게 됨
3	가장 큰 문제는 형사재판장 장기화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인데, 민사재판장을 장기화하겠다는 건 형사재판장 또한 장기화하는 것을 전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장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소액단독재판부를 예외로 할 이유가 없음
5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전담 재판부에 지나치게 장기간 근속하게 될 우려가 있음.
6	어떤 사무분담이든 상관없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극소수 대형법원을 제외하면 법관 사이에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 명백함



9. 정식재판청구사건(고정사건) 전담부를 제외한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196, 24.5%)
- ② 반대한다 (586, 7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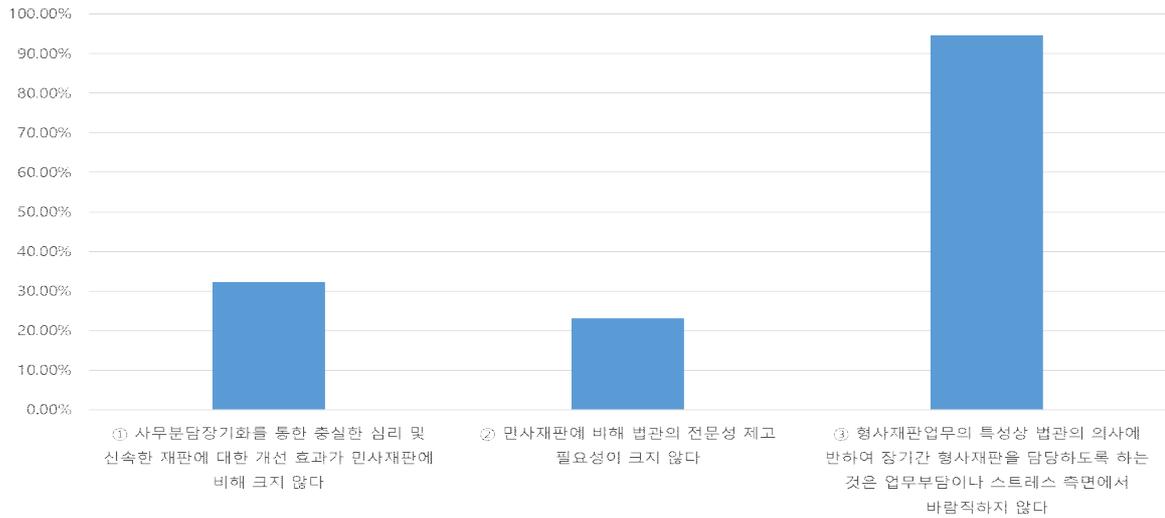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현행 형사재판장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과 병행하는 전제에서 찬성함
2	적용범위 제한을 얼마나 한다는 것인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전에는 답이 어렵다
3	고정 사건 전담부도 장기화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4	비선호 보직에 대한 보완 없이는 반대

10. (9번 문항의 ‘②’항에 답변한 경우)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한 일반적인 찬·반 논거 제외)

- ① 사무분담장기화를 통한 충실한 심리 및 신속한 재판에 대한 개선 효과가 민사재판에 비해 크지 않다. (189, 32.25%)
- ② 민사재판에 비해 법관의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크지 않다 (136, 23.20%)
- ③ 형사재판업무의 특성상 법관의 의사에 반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담당하도



특 하는 것은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555, 9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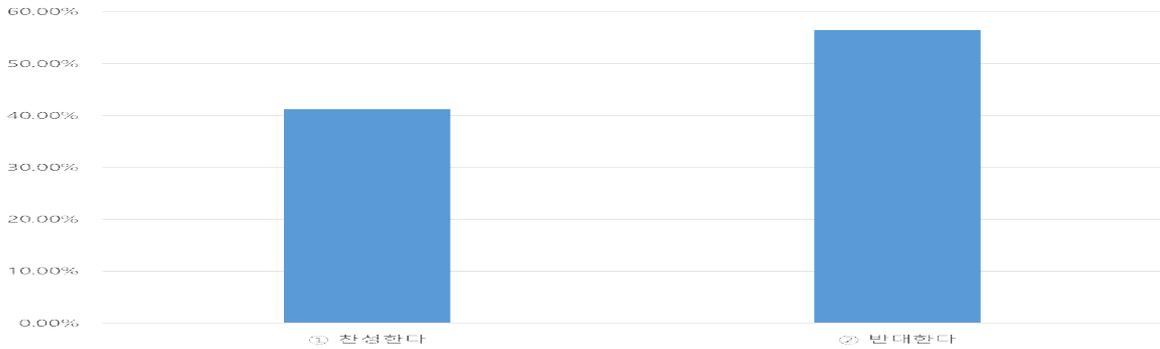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고정사건재판부를 예외로 할 이유가 없음
2	어떤 사무분담이든 상관없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형사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을 겪으시는(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겪는 동료법관을 많이 보았습니다. 본인이 지원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장기화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4	극소수 대형법원을 제외하면 법관 사이에 불공정이 발생할 것이 명백함



■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11.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330, 41.25%)
- ② 반대한다 (452, 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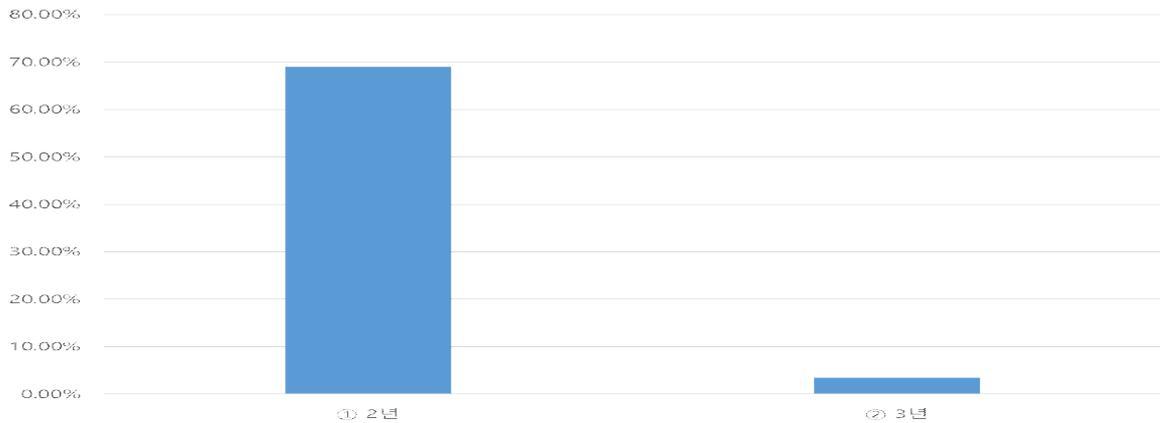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희망에 따라 장기화하는 것은 찬성
2	부장 의견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하는 것 필요함.
3	잘 모르겠다.
4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찬성
5	합의부가 실질적으로 대등화하는 것을 전제로 장기화에 찬성한다.
6	기본은 1년으로 하되 유임을 넓게 허용하는 방식이었으면 한다.
7	다른 분야는 괜찮으나 형사와 가사를 1년 이상 하는 것은 명백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8	당해 재판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의 의견이 모두 합치하는 것을 전제로 배석판사의 근무기간을 장기화하여야 함.



9	상황에 따라 2년 보임을 원하는 경우 고려하는 정도로
10	형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찬성
11	민사 합의부의 경우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함

12.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할 경우 몇 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년 (552, 69%)
- ② 3년 (28, 3.5%)



기타 의견	
1	장기화에 반대한다
2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화에 반대한다
4	연장에 반대한다.
5	법조일원화로 배석판사 기간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할 경우 배석판사시절 경험해야할 다양한 사무분담, 특히 민합, 형합, 민항, 형항 조차도 경험하지 못하고 부장으로 보임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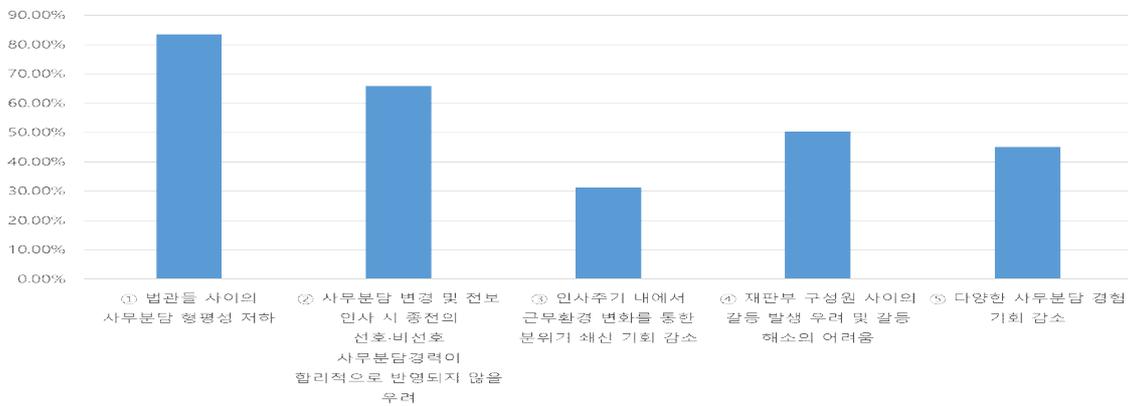
6	1년이 적절함
7	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와 별도로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케바케.
9	민사합의부 배석의 경우 2년, 그 외는 1년
10	1년
11	해당법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2년
12	배석판사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경험축적이 필요한 반면에, 배석판사 사무분담기간이 재판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배석판사 사무분담 장기화에 반대함. 현행 1년이 바람직함
13	법조경력 요구기간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점점 배석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는데, 그 기간에라도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함.
14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 필요성 없고, 설령 조금 있어도 득보다 실이 많음
15	배석판사 기간에는 최대한 다양한 업무를 접하여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16	배석판사는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대함.
17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2년
18	여러 사무를 경험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1년으로도 적당하다
19	모두가 만족하는 보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데 장기화는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부작용 최소화 방안

13. 사무분담기간을 현행보다 장기화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성 저하 (669, 83.62%)
- ② 사무분담 변경 및 전보 인사 시 종전의 선호·비선호 사무분담경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 (527, 65.87%)
- ③ 인사주기 내에서 근무환경 변화를 통한 분위기 쇄신 기회 감소 (250, 31.25%)
- ④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 발생 우려 및 갈등 해소의 어려움 (402, 50.25%)
- ⑤ 다양한 사무분담 경험 기회 감소 (361, 4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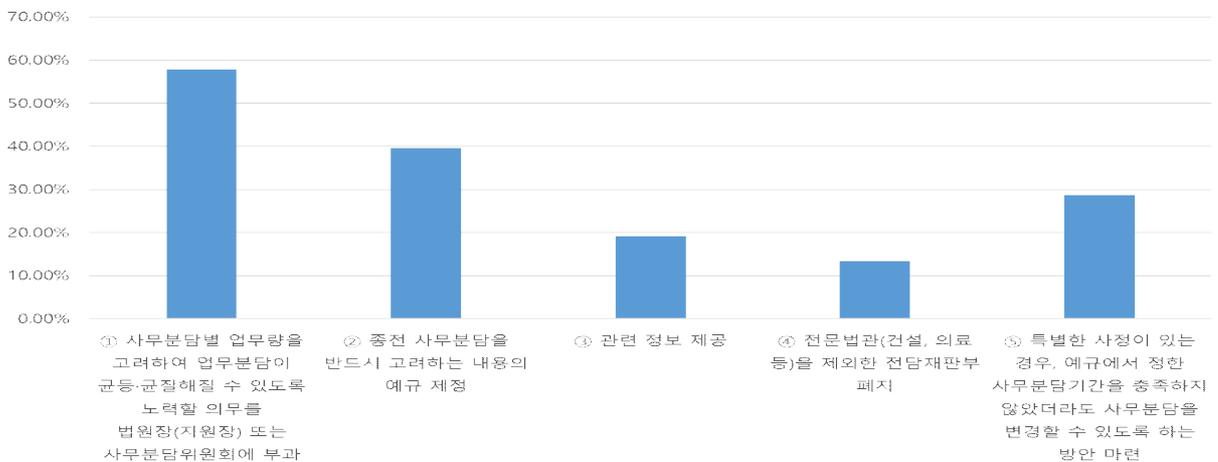
기타 의견	
1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2	사무분담이 세분화되어 있는 이상 형평성에 문제가 생김

14.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려되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사무분담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재판부를 증설·폐부하는 등 업무분담이 균등·균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법원장(지원장) 또는 사무분담위원회에 부과 (463, 57.87%)



- ② 종전 사무분담을 반드시 고려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317, 39.62%)
- ③ ‘인사희망원’ 제출 전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별 예상 공석(해당 연도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 되는 보직)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사발령 후 ‘사무분담희망원’ 제출 전 전입법원의 예상 공석(해당 연도 사무분담 변경 대상이 되는 보직)에 대한 정보 제공 (233, 19.12%)
- ④ 사무분담별 업무 균질화를 위하여 전문법관(건설, 의료 등)을 제외한 전담 재판부 폐지 (107, 13.37%)
- ⑤ 사무분담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규에서 정한 사무분담 기간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230, 28.75%)



15.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와 관련하여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실현되려면 사무분담의 균질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사무분담 균질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없는 당국의 사무분담 조정절차가 필요함. 당해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는 이러한 기능을 실현할 수 없음. 법원행정처나 상급법원에서 사무분담 균질화를 위한 조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무분담 장기화를 위하여 비선호 사무분담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앞서 형사재판부를 증설하는 등으로 사무분담별 업무부담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부 비선호 현상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판사들 사



<p>이에 사무분담에 대한 갈등을 더욱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됨 특히 전입판사들이 형사재판장으로 지정되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라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절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우선 형사재판부 비선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에서는 형사재판부를 증부하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대부분의 법원에서 민사 사물관할 확대로 고액 단독 생기면서 부장판사 아닌 판사는 민사단독 거의 못하고 형사단독, 가사단독 밖에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이제 가사단독도 확대되어서 가사단독도 못하겠네요), 사무분담기간까지 현행보다 더 장기화한다면 부장판사 되기 전까지는 민사단독은 정말 운 좋으신 분들 아니면 못하겠네요.</p>
<p>재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하여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법관들의 의견보다 법원 외부 사법수요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분담 장기화가 정착되면 궁극적으로 법관들도 속행사건 파악에 걸리는 시간 절약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p>
<p>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현재 사건의 지연과 적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이므로, 사건지연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고려해야함.</p>
<p>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 한다고 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 미제 처리율이 반드시 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설사 그러한 효과를 다소나마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설문에서 제시하신 것 처럼) 더 큰 여러 부작용만 낳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충실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은 법관 수 증원이나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 재판인력의 확충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사무분담기간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법관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법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간 등이 확립되어야 함.</p>
<p>이런 조사 후에 몇 가지 보완방안과 함께 사무분담 장기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사무분담 장기화 자체에 관하여 재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장기화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은 별로 없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다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했으면 합니다.</p>
<p>안 그래도 배석기간이 장기화되어서 힘든데, 사무분담까지 장기화되어 (마음이 맞지 않은) 합의 부장과 장기간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배석판사의 경우에는 사무분담 장기화방안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p>
<p>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전제가 되는 재판부의 증설 등에 있어서 직원 인사가 법원 인사보다 선행하여 재판부 증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유임이 받아들여지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사 배열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나 선호하거나 비선호하는 사무분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한다면 각 개별법관의 업무부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고, 각 법관의 업무 동기부여에도 영향을</p>



<p>미칠 것이 분명하므로 좀 더 세밀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시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업무 강도의 편차가 아직도 너무 크다. 여전히 형사재판은 선호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도 형사재판이 민사재판에 비해 훨씬 업무 강도와 투입시간이 많다. 민사재판이 고액단독 사건의 추가 등으로 힘들다고 하면서도 형사재판에 자원자가 부족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배석판사의 경우 첫 4년동안 형사합의 2년, 민사합의 2년이라는 고정된 두 가지의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항소부를, 형사합의부 보다는 민사합의부를 선호할 것이 너무도 명확하다. 또한 이는 의무배석기간을 통해 배석판사가 다양한 사건을 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합리적인 사무분담을 통해 재판의 신속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p>
<p>기피부서인 형사재판부(합의, 단독, 항소 모두)의 경우에는 장기 근무에 따른 보상책(재판부 증설을 통한 사건부담 완화, 재판수당 증액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장기적 관점에서는 법관들 사이의 기계적 형평보다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우선하여, 법관이 1개 법원에 5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전보인사는 최소화(경향교류시, 비재판보직 보임 등에만 전보)하며, 같은 법원 내에서의 재판장 사무분담은 변동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배석판사의 경우에는 배석기간 중에 민형사 업무를 두루 익혀야 하므로 2년 간격으로 이동).</p>
<p>법관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각급 법원 사무분담은 지나치게 법관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p>
<p>법관들 사이 사무분담 형평성 저하를 막을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및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문제는 대내외적 사법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 재판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음</p>
<p>오래 시킨다고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거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 처리하는게 나온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3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중학교, 고등학교가 각 3년 과정인거 아시죠?)</p>
<p>기본적으로는 선호도와 업무량을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가령 선호도가 높은 민사단독이 선호도가 낮은 형사단독보다 객관적으로 많은 업무량을 부담하도록)</p>
<p>모든 문제는 형사기피, 합의부기피와 같은 사무분담간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민사의 경우 적정선고건수 개념으로 인하여 합의부를 해체하지 않는 한 현재의 사건적체 등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어보이나, 법관 개인의 업무부담은 크게 늘지 않고 계속 줄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사건이 있는 형사재판의 경우 적정선고건수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양자간 업무부담이 균등해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봄. 따라서 법관들 간 선호도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메리트와 인사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 외에는 답이 없다고 봄 단일호봉제로 인하여 급여 차이를 둘 수는 없으므로, 성과급에 몇십만 원 정도 없어</p>



<p>주는 미봉책은 그만 두고, 연공서열식 성과급을 폐지하고 비선호보직에 상위등급을 주는 식으로 직무성과급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고, 인사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은 비선호 보직(형사합의, 단독, 영장)의 경우 경향교류 등에 있어 지방근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서울권 근무기간을 늘려주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p>
<p>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무분담별 업무부담을 균등, 균질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반대합니다. 법관들 사이의 업무량의 형평은 사무분담별 업무부담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부담의 차이가 있는 사무분담을 돌아가면서 담당하는 것으로 추구하여왔고, 그것이 법관들 사이의 업무량의 형평을 담당할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 보여집니다. 나아가 배석판사의 경우 법조일원화로 인하여 다양한 사무분담을 담당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었고, 앞으로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무분담기간 자체를 2년으로 장기화하는 경우 행정이나 파산 등 선호 사무분담은 물론, 배석판사로서 반드시 경험해야할 민합, 형합, 민항, 형항도 2개 이상 담당하지 못하고 부장으로 보임될 우려가 있습니다.</p>
<p>배석의 경우 다양한 재판 경험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소규모 법원/지원의 경우 매년 신입법관이 들어오면 자리를 비워줄 필요도 있으므로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p>
<p>인사 주기 장기화는 장기근무법관 등 일부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고, 절대 다수의 법관은 여전히 기존의 인사 주기에 따라 임지가 변경됨. 인사 주기를 고려하지 않은 장기화 논의가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의문임. 또한 사무분담 장기화 자체가 당연히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님.</p>
<p>형사재판장/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려면 재판수당의 차등지급 등 동시 보상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와 같이 다음 사무분담을 정할 때 배려하는 사후적 방안은 소속 법원 변경 등의 문제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고, 형사재판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됨. 차제에 적절한 보상책을 전제로 형사전문법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에도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진행하는 것은 추후 구성원의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임이 강하게 예측됩니다.</p>
<p>우선 전국적인 법관 경향교류의 폐지 내지 축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동일 사무분담 내의 재판부 구성에 관하여 1년 동안 반드시 3인으로 확정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사건별로 ABC 3인, ACD 3인, BCD 3인 등으로 재판부가 탄력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요.</p>
<p>경험이 적은 기간에는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이 쌓인 이후(예를 들면 부장판사 이상)에는 장기기간의 사무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기간 사무분담은 원칙적으로 원하는 경우에 원하는 사무분담만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현재 장기근무법원과 같은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음)</p>
<p>1심 전면 단독화와 함께 진행된다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문제가 어려울 것도 없으리라 생각됨</p>



니다.
형사합의에 형사항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작성하였습니다.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와 관련하여, 재판부 구성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석판사들은 부장 리더십에 불만이 있어도 1년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합의부 재판장 보직은 재판부 구성원과 화합 및 원만한 리더십이 가능한 부장판사에게 허용해야 하고, 결국 종전 근무평정에서 관련하여 문제된 사례가 있는지를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무분담 장기화에 찬성함. 부작용은 다른 형식으로 해결함이 타당함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그 자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관들 사이 사무분담의 선호, 비선호가 뚜렷한 상황에서 장기화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의 문제가 매우 강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을 담당할 법관의 경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상 장기 비선호 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 동기, 질이 하락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무분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저는 배석판사이므로 배석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형사합의부에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이후 사무분담은 본인이 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조건 형사 이외의 사무분담을 하도록 한다든지, 반대로 민사합의부에서 1년 초과 근무를 하였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형사합의부 등 비선호 사무분담(본인이 원한다면 별론)을 하도록 한다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도 형평을 도모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법관에게 경향교류에서의 지역선정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근무평정 등에서 일정한 이익을 주는 등 뚜렷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분담을 장기화해서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클 지 정량화하여 지금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합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야 하나 업무는 과중해지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 없이 사무분담의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소되리라 생각되지 않고, 법관 사이에 사무분담을 둘러싸고 이해충돌의 정도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사무분담 장기화는 반사적 효과로 비선호보직을 누가 맡게 할 것인가, 비선호보직을 맡게 된 것에서 나아가 그 기간까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법관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고민과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선호보직 담당 장기화의 관련 문제로, 아직 형사전자재판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통 비선호보직으로 분류되는 형사재판 사무분담을 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스마트워크를 하는 것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많은 법원들의 인적 규모 편차가 매우 크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큰 법원의 경우에는 재판장 사무분담 장기화가 쉬울 수 있으나, 지방의 작은 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자칫하면 특정 재판장에게 특정 사무분담이 맡겨지는 현상(선호나 비선호 모두 해당)이 심화될 수 있다. 사무분담 장기화를 전국법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큰 법원에



<p>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먼저 그 경과를 보고, 작은 법원에서 개선할 점도 검토하여야 한다.</p>
<p>형사재판부 근무 법관이 소수이므로, 각급 법원 판사회의의 다수결로 결정할 경우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목격한 바도 있음.</p>
<p>재판장의 경우 기일 진행 등에 있어서 사무분담을 장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배석판사의 경우 현행과 같이 기일 진행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사무분담 장기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석판사 때는 매년 사무분담을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재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배석판사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다른 사무분담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본인 및 법원 입장에서 이익인 것으로 보여서, 원칙적으로 5년 미만 배석판사는 매년 다른 사무분담을 맡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음 판사들이 기피하는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에서 기피? 사무분담을 특정하여 기피 사무분담을 장기간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그 업무를 맡기되, 위와 같은 내용을 사무분담 신청 전에 사전고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음 판사들이 선호하는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것은 기존 사무분담 내역, 특정기수 독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장기화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임 다만 기피와 선호를 구분하는 기준을 법원별 전체판사회의에만 전적으로 맡길 경우, 다수의 횡포? 법원마다 편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행정처 또는 전국법관회의에서 일단 기피 업무의 카테고리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법원의 전체판사회의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되,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카테고리 밖에서도 기피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음 선호사무분담 장기화는 향후 법관 증원을 통한 업무부담의 완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음</p>
<p>급여나 전근 시 benefit을 주는 방안 고려.</p>
<p>소속 법원이 변경되더라도 비선호 사무분담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선호 또는 최소한 중립적 사무분담을 맡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비선호 사무분담 시 직무성과급의 실질적 증액 등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 근무에 따른 재판부 내 갈등을 해소할 기구나 제도가 필요합니다.</p>
<p>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신속한 재판, 충실한 심리, 법관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만으로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사무분담을 둘러싼 법관들 사이의 불만과 불필요한 분쟁만 야기하여 법원 조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p>
<p>사무분담기간에 관한 논의는 거대한 사무분담이라는 문제의 빙산의 일각이다. 판사들이 재판에 전념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기대한다.</p>
<p>2년 초과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 근무기간 자체를 2+2로 운영하는 방안 건의드립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경우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다보니 2년 이후 1년만 근무하게 됨. 개인 사정에 따라 한 법원에 2년만 근무하거나 2+2=4년 근무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무분담을 2년씩 담당하게 되어 새로이 방안을 만들지 않더라</p>



도 사무분담 장기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개별 법원별 사정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의라 생각됨
전국 단위의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는 이상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부적절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 생각함. 오히려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만을 중시한 사무분담, 고된 사무분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부재 등이 더 크다고 생각함. 특히 현재 주당 선고 건수가 고착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주는 장점은 신속한 처리에 크게 기여하기 힘듦.
사무분담을 장기화하기 전에 형사재판과 같은 비선호재판에 대한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장기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도 추진의 원인과 계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재판지연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면, 목적과 수단 사이에 괴리가 있어 보임. '재판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인사자료 등이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수와 나이 등을 고려한 순환 방식으로 정해지는 사무분담을 장기화한다고 하여 적절한 사건처리를 담보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사건의 적체는 단기간에 생기지만, 이를 시정하는 것은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화'를 원칙으로 하기보다는 원활한 재판운영을 한 재판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않고 3년을 원칙으로 할 경우에는, 부적절한 재판장에 대한 교체 자체를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예외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더라도, 이는 법관 사회는 물론 내외부적으로 '부적절한 재판장'임을 낙인찍는 것이 되어 사실상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예컨대, A법원으로 전보되어 3년을 근무하여야 하는데, 내내 형사합의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는 건 자원자가 나오지 않는 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사무분담희망원에도 압도적 비율로 민사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재판장(특히 합의부) 자원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이 결국 이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형사재판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무분담의 재판장 장기화는 형사재판장을 누군가가 자원함을 전제로만 논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 단계에서 저는 그런 방안이 잘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방식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0.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기조에 동의하나, 그 시행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법관들 사이 사무분담 형평성 저하는 물론 저년차 판사의 경우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0. 아울러, 출산휴가, 육아휴직, 해외연수 등으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구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특히 근무법관수가 많지 않은 지원의 경우 인력운용의 한계상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0. 각 법원의 구조 등을 고려한 섬세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무분담별로 업무량의 차이, 스마트워크 가능여부, 법관의 일반적인 선호도 등의 차이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마다 사정이 다를 순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 사무분담 시스템 하에서는 법관 개인의 희망, 법관 사이의 형평이 사무분담방안의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두 가지의 가치가 우선되는 한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례로



<p>올해 수도권 소재 법원에서 32기 부장판사님들께서 전출희망을 하였음에도 소속 법원에 사실상 강제로 잔류하시게 되었는데, 이분들의 해당 법원에서의 3년째 사무분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보면,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가 얼마나 추진하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를 2년 하셨던 분들은 (고생하셔서) 그분들 개인의 희망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 등 다른 사무를 맡게 되고, 민사를 2년 하셨던 분들은 (선호보직이니) 다른 법관들 사이의 형평 때문에 3년을 맡으실 수 없으셔서 형사 등 다른 사무를 맡게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2년간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당 법원에 남아 있음에도 갱신 등을 거쳐 다른 판사에게 재판권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3년차에 맡게되는 사무는 (장기근무법관이 아닌 이상) 사실상 1년만 맡게 되는 결과 장기미제처리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를 추진하려면 먼저 업무 편차나 희망 선호도 차이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또한 전입 전출시 다음 법원에서도 반드시 종전 사무분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완책 없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장기화만 추진할 경우 여러 모로 부작용이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p>
<p>사무분담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하게 된 경우, 함께하기 어려운 부장판사 또는 배석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된 경우에 너무 가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p>
<p>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따른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장기법관 내지 지역계속 법관 확충을 달성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p>
<p>최근들어 판사들이 왜 민사재판부를 선호하고 형사재판부를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이에 대한 개선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형사재판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보이는데, 그러한 노력 없이 형사재판부가 힘들다는 것을 전제로 번갈아서 나누어 분담하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분담 장기화는 옳은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클 것 같습니다.</p>
<p>사무분담 장기화는 법관의 전문화와 병행되어야 함. 형평 등의 미명 하에, 전문성 없는 법관이 전담 재판부의 재판장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p>
<p>장기화에 반대합니다.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 형평성, 근무환경 변화를 통한 분위기 쇄신 기회,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관계, 다양한 사무분담 경험 기회 등을 고려할 때 장기화의 단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재판 및 충실한 심리를 위해서는 재판연구원 확충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수도권에서의 짧은 법원인사 주기를 장기화하는 논의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됨(전입자 불이익원칙(!))을 고려하면 더욱). 사무분담의 장기화가 일응 전문성을 강화나 사건처리율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됨. 현재에도 형사 등의 부담되는 업무에 대한 기피가 심한 상황에서, 업무량의 형평이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전제로 사무분담 장기화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p>
<p>민사의 경우 장기화보다 중요한 것이 단기 재판장 지양이라고 생각함. 예컨대 서울중앙의 경우 1년 재판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다른 부작용 등 고려할 때 중앙 근무기간을 4년으</p>



<p>로 하여 2년 + 2년(또는 1년 + 3년)을 하도록 함이 바람직함. 다른 법원의 경우에도 특히 합의부, 고액단독의 경우 1년 재판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p>
<p>사무분담을 장기화 한다고 해서 미제사건이 줄어들거나 효율적인 재판이 된다는 견해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재판장이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 사무분담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p>
<p>사무분담 장기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만만치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커질 것이 우려됨/ 2년동안 처리해야 할 것을 3년동안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음/ 1년 뒤에는 변경될 것을 기대하며 버티는 경우라면 2년으로 연장될 경우 그 사이에 갈등이 심화, 폭발할 수도 있음/ 기록을 열심히 검토하였는데 판결도 쓰지 못하고 교체되는 것으로 인한 인력 손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무분담장기화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검토한 사건을 판결을 쓸 수도 있도록 사건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의 사무분담을 질리도록 오래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 될런지는 의문임/ 섬세하게 분석하고 섬세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법원 내 기존 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진행해야 함 판사와 국민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 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사건이 정체가 되는 원인을 우선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논의해야 함/ 사무분담이 장기화 되면 매너리즘에 빠져 새롭게 사건이 정체가 되는 사건들도 분명발생할 것임/ 새로운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서 그동안 장기미제로 있다가 손쉽게 해결되는 사건도 있음/ 불필요한 변경도 지양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음/ 사무분담 장기화로 인해서 사무분담간의 형평성은 더욱 요원해 질 것임 / 국민들이 중국적으로 더 만족할 것인지 명확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시행해서는 안 될 것임/</p>
<p>처음부터 전문법관임을 명시하여 임관한 경우가 아닌데, 특정 시기에 특정법원에 부임하다보니 특정 재판부에 가게 되어 그 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임지에 관한 형평의 문제 제기나 불만이 누적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무분담에 관한 불만이 더 누적되거나 기피부서를 피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널리 퍼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전문법관으로 장기간 근무할 것을 전제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처럼 업무부담의 차이가 큰(민사와 형사 사이, 같은 민사 안에서도 노동사건이나, 형사 안에서도 부패사건 등 재판이 힘들다고 알려진 부서) 상황의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북불북으로 사무분담 장기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거나 입이 무거운 판사들의 희생이 누적되는 결과가 올까봐 걱정입니다.</p>
<p>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일이고 설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년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재판지연 등 외부 지적이 있으니, 깊이 있는 고민도 없이 설문조사로 해결하려는 것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p>
<p>설문이 무의미함. 형사재판을 선호하거나 민사재판과 동등할 정도로 희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누구나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형사재판을 장기간 맡으려는 분이 있나요?</p>



<p>괜히 이런 설문을 ping계삼아 사무분담 장기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자체에 반대함.</p>
<p>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해서 우려가 있겠지만, 제도를 시행하면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들이 시도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전체 판사들의 업무환경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사무분담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 형성성 문제가 종종 있었음에도 1~2년만 참아라 하면서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와 더불어 같은 법원 근무 장기화도 확대되었으면 합니다.</p>
<p>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부의 경우 재판장과 배석2인 모두 동일 재판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공식적인 방법으로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본인이 불희망한 사무분담을 배정받은 경우 다음 사무분담시 그 사정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 이동 시 종전 사무분담 고려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의 인사 - 법관 조회에 기존 근무 법원이 나오는 것처럼 기존 사무분담도 모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현행 사무분담기간 하에서도 본인이 유임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속 같은 재판부에서의 유임을 허용해도 될듯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1개의 법원에서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업무태만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1개의 사무분담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p>
<p>14항 관련 선호보직과 비선호보직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있음.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장은 선호하나 형사재판장은 비선호하는 보직이므로 종전 사무분담을 반드시 고려한다고만 예규에 규정할 경우 negative 방식의 고려인지 positive 방식의 고려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무분담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고려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p>
<p>민사분안 사건과 같이 심리의 연속성이 필요하고 판사들 사이에 선호도가 높은 업무의 경우에는 3년으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하여도 매년 인사이동으로 다른 법원으로 전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로 인하여 당해 사무분담을 다른 판사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같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나 야근이 불가피한 업무의 경우에는 장기간 근무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적지 아니하고 질환마저 발생할 수 있어서 3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사무분담 장기화는 희망자에 한하여 3년간 근무하도록 하고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p>사무분담장기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우연에 의하여 선호, 비선호 사무분담이 장기간으로 정하여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법관 상호간 사무분담 결정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사무분담 장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사건 적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p>
<p>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불가피하게 장기간 공식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무분담에 사실상 혜택을 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신청단독 우선배치, 비선호 사무분담인 형사합의부 회피 등)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제도가 정착될 경우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이용한 사무분담 쇼핑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p>



재판부 내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할 만한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평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모두 재판부 구성원의 인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재판부 내에 갈등을 이유로 재판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심적인 부담감, 평판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고통을 원칙적으로 2년동안이나 감내 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판부 구성원의 관계가 원활하다는 점이 드러난 경우에만(부장님, 배석 모두 유임을 원하는 경우) 배석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인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실무는 형사재판(재판장 및 배석 포함)을 기피하고, 민사재판, 특히 민사단독 재판장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모든 법관이 형사재판장을 기피하고, 특히 민사단독재판장을 희망합니다.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분위기는 단순한 업무의 과중(미제 사건 수) 때문이기보다는, 현재 특히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재판실무와 법률규정 사이의 간극이 크고, 그로 인하여 모든 형사재판장은 비유하자면 '원죄 의식'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판중심주의 실현은 '선별된 증거'를 중심으로는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으나, 모든 증거에 대하여 법률규정에 따른 증거조사를 거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의된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성성립도 형식적 진성성립 인정에 그칠 수 밖에 없고,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를 꼼꼼히 읽고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한 의견을 줄만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영상 증거를 모두 변론에서 시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형사재판의 업무량은 현재 실무상의 (약식의) 공판절차를 기준으로 산정된 후 이를 근거로 사무분담을 정해지고, 형사재판장은 법률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 없이 타협하면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규정에 따른 공판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과 같은 사건처리 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변론을 열어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저는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 가사재판 등 모든 재판을 최소한 3년 이상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사무분담의 공정한 배분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업무량 산정 방식을 기초로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을 장기화는 형사재판부의 대폭적인 증설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장이 법률규정에 충실한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도 그 업무량(특히 변론기일 진행 횟수 등)이 민사단독재판과 유사하여 형사재판장 기피 현상이 없어질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형사재판장 기피 현상은 사무분담 형평성 저하 등 법원 내부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법관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현상은 향후 법원의 형사재판 역량을 저하시키고, 결국 국민들의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사무분담의 장기화와 형사재판장 기피 현상의 해결이 함께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후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이 확충되었고, 현재 그러한 기피 현상은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지만, 차라리 예전과 같이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독립된 형사법원이 개원한다면,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법률규정 맞는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와 함께 동일 법원 근무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잦은 전보로 인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법관들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생활근거지가 아닌 경우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를 충분히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법조일원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의 사무분담기간(예를 들어 민사)을 장기화하게되면 보직 변경의 기회가 제한되어 다른 사무분담기간도 마찬가지로 장기화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간 연속하여 형사재판을 맡게되면 법관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 같다.
소액도 본인이 원하면 2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재판장 원칙이 시행되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재판장 2년 이후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길 바람.
사건 처리율 및 장기미제 사건 증가의 해결 방안으로 재판장 기간의 장기화를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함.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 재판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 전국 법원의 사무분담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각급 법원에 맡겨져 있는 현재 상황상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불가능함) 법원별 근무기간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사무부담의 장기화 하는 경우 형평에 반할 여지가 매우 높아짐.
재판장, 특히 부장판사 이상급 법관의 사무분담 장기화는 찬성합니다.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법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하게 할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는 반대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이른바 '병커' 재판장과 함께 근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또한 배석판사의 경우 아직 경력이 짧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분야 탐색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여러 사무분담을 경험하게 할 필요성도 큼니다.
형평에 맞는 사무분담이 되도록 비선호 분담을 맡는 경우 차후에는 법관의 의사를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규정된 재판장 2년 원칙부터 철저히 지켜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재판장 2년 원칙 자체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해왔고, 저 또한 원칙대로 2년 근무한 것은 여지껏 2번밖에 없네요.
민사에서 여러 전문재판부와 전문법관 선발을 통해 장기복무를 유도하듯이 형사에서도 전문법관 선발을 통해 재판의 질과 통일성을 높이고, 장기복무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장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대국민 접점이 가장 크며, 사법신뢰와 직결되는 형사재판 분야에서 전문법관 도입을 주저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알기 어려움.
사무분담 장기화의 효과에 전반적으로 깊은 회의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법관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할 본질적인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제도 변경은 별달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인이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늘어난 사무분담기간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더 업무효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디 사법행정인력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의 탐색에 투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분담은 반드시 장기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법관의 책임성 문제입니다.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힘든 사건을 처리하지 않게 할 동기를 제공합니다. 사건을 적게 처리하거나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하더라도 근무기간이 짧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문제는, 대규모 법원을 제외하고는 민단과 형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 조 절로 1심 단독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졌습니다. 형단의 재판업무 부담 등으로 사무분담 장기화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단독판사들이 민사와 형사를 함께 배당받는다면 사무분담 변경 요인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상황 변화(휴직 등)에 대한 충격도 완화될 것입니다. 이로써 한 법원 근무기간 동안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지 않도록 제도 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담재판부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민사/형사는 모두 처리하되 전담을 세분화하여 장기간 동안 전담사건을 처리하게 해서 전문성을 키우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담사건으로 인한 업무량 조절은 가중치로서 적절히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사무분담위원회에서 그에 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분담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호 보직과 비선호 보직 간의 업무량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고(오히려 비선호 보직의 업무량을 다소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법관 증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분담이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고, 그것이 판사의 몸값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된다면, 특정사무분담 기회를 가지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재판부의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력이 많지 않은 대다수의 판사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데, 우연한 기회에 사무분담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게 된 판사는 계속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판사는 전문성을 가질 기회가 적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견을 잘 수렴하여 현명한 정책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논의는 결국 3년 근무법원의 경우 유임을 신청하지 않는 한 2+1 형태로 마지막 1년은 1년만 재판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의 해결은 사무분담간 업무량 내지 업무부담의 불균형 해소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형사재판장의 기피(형사재판장들 사이에서도 전담에 따른 편차가 너무 큼) 현상을 고려할 때, 원하지 않음에도 형사재판장을 3년간 계속하여야 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모두가 기피하는 사무분담을 맡은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부득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서울권의 경우 형사재판장을 2년 맡은 뒤 원하는 경우 민사재판장으로 2년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음. 마찬가지로 처음 민사재판장을 맡게 되는 경우에도, 2년 뒤 유임신청도 가능하고(유임신청하는 경우 1년 더 근무하고 이동), 이후 2년 근무를 전제로 형사재판장으로 사무분담 변경도 가능하게 하면 '형사재판장을 맡은 경우 4년 근무 가능'이라는 예외에 대해 이의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서울권은 4년 근무를 희망하는 재판장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됨) 물론 형사재판장의 경우에도 2년 뒤 유임신청하면 1년 더 근무하고 이동할 수 있게 해 주어도 무방함. 다만, 지방권, 수도권권의 경우 4년 근무를 희망하는 재판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와 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형사 재판장은 2년 근무하고 이동하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떻



지 (사실상 형사재판장은 스마트워크 신청이 불가능한 점까지 고려)
사무분담기간을 3년으로 장기화하는 경우 어려운 사건과 장기미제사건 등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경향이 보다 증대될 것이라 생각함
비선호 사무분담(형사)의 업무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등으로 사무분담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 있음.
형사재판장의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이드 형사이드 재판장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형사업무 담당 법관들의 업무의욕이나 사기를 꺾어 장기적으로 법원에 큰 손실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법관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면서도,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무분담기준이 마련되길 희망 기피 사무분담을 부담한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나 배려 제도 도입
지방부장 전입 인사명령 이후 지방법원에서는 업무분담이 균등균질해 질 수 있도록 모두 업무 자체는 배정을 해놓은 뒤 사무분담희망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희망원을 받은 뒤 사무분담 조정을 하게 되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비선호 사무분담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업무분담을 경감시켜(예를 들어 3개 재판부를 5개 재판부로 늘린다든지, 선호 사무분담은 3개 재판부를 2개로 줄인다든지) 이를 선호하는 사무분담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재판부 업무분담을 만든 뒤 미제 건수나 접수 건수 등 통계를 제공한 상태에서 사무분담희망원을 받아야 한다
본인의 동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함
1심이 전반적으로 단독재판이 아닌 이상 재판부 내 갈등이 생길 경우 1년 동안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라 재판부의 파부라는 파국적 결말로 쉽게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로 점차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가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무분담기간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 있음. 따라서 굳이 예규 등에 못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각 법원의 실정에 맞도록, 사무에 따라 현재 기간을 유지하는 영역, 좀 더 길게 하는 영역 등을 차별적으로 미리 고지하여 희망을 받는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음.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를 못박는 것은 경우에 따라 고착화되고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됨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비선호보직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책을 제시해주어야 합니다(채택근무 혹은 스마트워크 가능 일수 확대 등)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대규모 전보인사 제도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전체적인 인사제도의 변화 없이 사무분담기간만 장기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의문임.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 구성원간 갈등을 줄이고, 종전 사무분담까지 고려한 공평한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무분담위원회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장(지원장)이 주도적으로 사무분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합니다. 업무처리기간이 길게 주어지면 그 사이 많은 업무가 빠르게 처리된다거나 업무가



<p>충실히 수행될 수 있다는 논제는, 누가 보더라도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너무 단기의 업무처리기간은 업무의 신속성이나 충실성을 해할 수 있겠지만, 적정한 업무처리기간을 초과한 장기화는 업무의 신속하거나 충실한 처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2년이 업무처리기간에 있어 적정치 않은 단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무분담기간은 법관의 전문성 향상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신속한 재판, 충실한 심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는 법관들 사이의 사무분담의 형평성을 현저히 저하되어 오히려 법관들의 법원에서의 이탈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법이란 결코 산술적이거나 논리적인 잣대로만은 다룰 수 없는 인간의 삶과 가치에 관한 영역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을 다루는 법관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분야에서의 전문성만큼이나 민사, 형사, 행정, 회생 등의 모든 분야에서의 실무를 최대한 경험하여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전문성 만큼이나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면모도 갖추어야 합니다.</p>
<p>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관의 전문화를 위하여 근무법원이 바뀌더라도 전담을 원할 경우 이를 유지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검토를 철회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p>
<p>부작용 완화 방안으로 제시된 1-5항은 모두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음. 실질적인 재판업무의 균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사무분담 장기화는 반대함.</p>
<p>의무적인 장기화가 아닌 장기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과도기 필요(법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기근무 가능. 다만 희망자가 많은 보직의 경우 상한을 규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경가능한 방안으로 간다면 그 특별한 사정의 광범위한 인정이 필요함. 대등부의 경우에도 법관의 의사에 따라 장기간 대등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이 있는 등 선호 사무분담은 법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새로운 사무분담으로의 이동을 선호하는 법관과 기존의 사무분담을 계속하는 것을 원하는 법관이 있음)</p>
<p>사무분담을 세분화하거나, 전문재판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사무분담은 민사, 형사, 행정 등으로 단순화하여 모든 판사들이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법률문제 전반에 걸친 바람직한 해결이 희생되고 있습니다.</p>
<p>일률적인 장기화 반대합니다. 특히 고법의 경우 이미 사무분담기간이 2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원이 변경되지 않음으로써 빚어지는 문제도 많습니다.</p>
<p>사무분담 장기화의 기본 취지는 공감함. 다만 힘든 업무에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다음 사무분담에서 이를 고려하는 등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법원을 옮긴 경우에도 이전에 힘든 업무를 장기간 하였다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같은 기록을 3-4재판부가 검토하면서, 인력이 낭비되고, 심리방식의 상이 등으로 불신 초래 우려 있음 - 한 재판부가 한 사건을 책임지고 검토, 선고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기 - 형사 등 비선호 재판부에 대한 배려(법원 이동시 연달아 형사부 배치 않기 등)</p>



<p>사무분담 장기화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의욕이 떨어져가는 법관 사회에 매너리즘을 더하여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소송의 영역별로 전문성을 점차 개발하고,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전문법관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법원을 활성화 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처리의 효율을 도모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p>
<p>사건 적체의 원인을 영뚱한 곳에서 찾고 있음</p>
<p>반대합니다.</p>
<p>지원의 경우 인사 시기에 따라 선호 재판부와 비선호 재판부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무분담을 장기화할 경우 비선호 재판부 전담도 그에 따라 장기화될 수 밖에 없어 불합리합니다.</p>
<p>현재도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형사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단축근무나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까지 다수 생기고 있는데,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면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임. 결국 미혼 등으로 휴직사유가 없는 법관들 위주로 형사재판부가 채워질 우려도 존재. 사무분담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재판부를 증설, 폐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을 정량화하여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분담 균등을 담보할 수 없음. 설령 투입되는 업무시간은 정량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질(예컨대 형사재판 특유의 스트레스)까지 균등하게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종전 사무분담을 반드시 고려하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무분담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역시 고른 사무분담을 담보할 수 없음.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면 단독재판부에 공석이 잘 나지 않고, 결국 배석기간이 긴 법관이 또다시 배석(그것도 2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배석기간 역전이 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임.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 저하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근무의욕과 직결되는 문제임. 법관들 사이에서 사무분담시 형평성이 저하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법관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근무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무분담 장기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도 달성하기 어려움.</p>
<p>사무분담 장기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현행 제도 변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p>
<p>사무분담 장기화에는 찬성하나, 기존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의 기간이 지나면 그 연장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p>형사합의부 배석을 2년 해야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합의부 배석을 2년 하는 사람은 지방근무 배제 등 반대급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법관 전보 주기를 늘리고 횡수를 줄여 법관의 다른 법원 전보를 최소화 해야 함</p>
<p>사무분담 장기화와 함께 열심히 근무해서 사건을 많이 처리한 사무분담을 폐부하고, 사건을 쌓아둔 사무분담을 증설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민사합의 접수이 많게는 40%나 줄었는데 비현실적인 적정처리건수만을 고집하며 미체를 줄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민단이 접수가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처리를 많이(야근 등으로 업무시간을 증가시켜)하였음에도 처리율이 민단이 더 높다는 이유로 민단을 증설하지 않고 민사합의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외에도 형단 재판장들은 접수에 맞</p>



<p>추어 업무량을 늘려서 사건수를 적정하게 유지하였던 반면 민단 재판장들이 접수와 무관하게 업무량을 유지하여 사건수를 폭증시킨 경우에도 민단을 증설하는 어이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무분담 회의에서 반드시 접수대비 처리율을 고려하여서는 안되고 '실질처리건수' 및 '접수 증가추이'만을 주요 요인으로 삼아 고려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를 장기화하면 직전 사무분담(타법원 포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p>
<p>배석판사의 경우 다양한 사무분담 업무 경험을 위하여 사무분담기간 장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
<p>분쟁성이 강해지고 사건의 쟁점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법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지 않는 이상 사건처리 적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미 내외부의 신랄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고도화, 전문화에 대응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 법관 제도를 더욱 확충하고, 전담재판부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 의료 외에도 기업, 국제거래, 노동, 지재, 행정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잦은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사건처리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무분담 장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사무분담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신속한 재판, 충실한 심리, 전문성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희망이 특정 사무분담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사무분담 결정에 대한 불만, 불신, 박탈감만 크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처리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인계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관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p>
<p>단독재판장의 경우 장기화가 적절하나, 합의부의 경우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근본적으로 사건처리기간의 장기화 등은 대내외적 사법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이지, 사무분담기간이 짧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처리기간의 장기화 등 문제점은 법조일원화로 인한 법관의 고령화 등에 크게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신규법관 임용과 관련하여, 로펌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파트너가 되어 서면작성에 대한 크게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인재들을 예전같이 배석판사로 선발하여 수년간 판결문 등 다량의 서면 작성 업무에 투입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래 전에 맡았던 사무분담을 다시 담당하게 되었을 때, 재판경험은 보다 풍부해졌지만, 그 사이 사건의 난이도는 올라갔고, 당사자들의 요구 수준은 높아졌기에 판결문 작성에 따른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타이핑의 어려움까지 가중되어, 사건처리 속도는 쉽게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 업무시간 중 기록검토 등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 비율은 줄어든 반면, 서면 작성 등에 투입되는 시간 비율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 이외에 다른 법관들도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서면 작성 등을 보조할 재판연구원 등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고령화될 법관들에게 육체 노동의 수준을 높일 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이러한 여건이 갖춰지고, 비선호 업무의 부담 완화 등을 통한 형평성</p>



<p>문제 해결 이후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민사사건의 처리기간 단축만을 목표로 한다면, 민사재판부의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단기적으로 분명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 등 다른 사건들의 처리에서 분명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예상합니다.</p>
<p>사무분담 장기화가 신속한 재판, 충실한 심리, 법관 전문성 향상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계속하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p>
<p>특정 사무분담만의 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 특정 사무분담 외에 다른 사무분담만을 맡게 되어 결국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반대합니다.</p>
<p>고법판사의 경우, 지방부장 근무기간 중 고법판사로 발령을 받은 경우, 3년의 경향교류 기간이 지방부장근무기간과 고법판사 1차경향교류 기간으로 나뉘어져 사무분담의 장기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법원의 1차 경향교류와 2차 경향교류 사이의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사무분담의 장기화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차원에서, 고법판사의 발령 시기와 경향교류 시기에 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법관이 주기적으로 희망에 관계없이 전국단위 전보인사의 대상이 되는 상황,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업무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사무분담기간을 지금보다 장기화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소규모 지원 등에서 사무분담 장기화를 하는 경우 형평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서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p>
<p>합의부 배석판사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그 희망을 고려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 (갈등구조에서 발언권이 낮은 배석판사에 대한 제도적 배려) - 재판장의 경우, 법원간 인사이동 이후에도 종전 사무분담이 일률적으로 고려되어 형평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장기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 비선호보직(형단 등)의 경우에는 2년 후에, 대등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p>
<p>사무분담 관련하여 가장 큰 불만은 아무래도 형사부와 다른 사무분담 사이의 간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부 법관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워크 이용 불가 2. 종이기록이라 업무용 가상 PC 이용 업무 불가 3. 증인신문이 많아 일과시간 대부분을 법정에서 보내다 보니 일과시간 중 업무를 완료하는게 거의 불가능. 자연스럽게 야근과 주말근무로 이어짐 4. 구속기간 제한으로 인한 사건처리 압박. 휴정기 때도 재판하는 경우 많음. 이러한 사정 때문에 1년마다 사무분담을 변경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1년만 버텨라. 내년엔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해 형사부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미제 수를 많이 줄여주는 등으로 업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p>
<p>재판장 본인이 희망하고, 법원에서 사무분담 사정이 되는 경우 3년을 보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일률적으로 3년을 원칙으로 정하면 많은 형평성 저해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형사 재판장에 대한 기피가 더 커질 것입니다. 형사를 2년, 민사를 3년 하는 경우에도 형사</p>



재판장을 하고서 민사 3년 재판장이 다수면 형사를 벗어난 사무분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같은 재판장, 같은 배석으로 2년 고정될 경우 재판장-배석 갈등, 배석-배석 갈등 해결 어려움.
신속한 사건처리나 전문성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큰 규모의 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이 전문적인 사무분담을 처리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현재 사건적체는 법관평균연령 상승, 동기부여의 제한, 사회여건의 변경(자녀양육부담의 증가, 워라벨 중시 등) 때문으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한다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 보이지 않습니다. 외려 매너리즘으로 인해 전체적인 효율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이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때 법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각종 사무분담 업무간 실질 근무량이나 스트레스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차가 낮은 법관일수록 선호보직을 말지 못하고, 7년이 넘어도 단독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하더라도 비선호 보직에 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매년 사무분담이 변경됨으로써 이런 차이에 대한 해소기회가 생기는데 사무분담간 실질적인 형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부작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기간의 문제나 담당할 업무의 문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역할을 맡게 될 경우에 대한 "위험부담"이 장기화되는 문제로 보아야 한다. 예전에는 아무리 안좋은 자리건, 안좋은 사무분담이건, 안좋은 재판부 구성원을 만났더라도 '1년이면 끝나니까' 참고 버틸수 있었다면, 2년, 3년 장기화 되었을 경우에는 누가 감수하려할까? 휴직인원이 더 늘어나고, 가동인원은 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법관증원 하더라도 업무는 줄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 되면, 필수적으로 사무분담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개선을 예규 등으로 정립하여 반영
현재 처리기간의 장기화 및 장기미제사건 증가 문제는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로 해결될 수 없음. 다른 본질적인 해결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현 상태에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도입되는 경우 장기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고 위 설문사항에서 예시로 든 여러 문제점들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됨
최근 법원의 사건적체와 관련한 내외부의 비판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논의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판사들은 1명당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 많았고, 이는 신규 법조인을 바로 임용하여 합의부를 구성하고, 법원에 장기근무하는 법관이 적을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고, 몇 년 전부터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고 있는데, 법원에 신규로 임용되는 사람들의 연령과 연차를 고려하였을 때 기존과 같은 사건처리속도는 더이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지금 데이터만 보면 2,3월의 사건처리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사무분담 변경 주기를 장기화하면 사건처리건수가 증가될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판사는 기계가 아닙니다. 드물게 한 합의부에서 배석을 2년 한 경험이 있는데, 2년차에



<p>선고한 건수가 1년차에 선고한 건수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재판장이 변경된 것도 아닙니다). 2,3월은 본인의 사무분담이 변경되거나, 주위 동료 법관의 사무분담/근무법원이 변경되는 것을 보며 1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고, 그 기간을 거치는 것이 그 다음 해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아주 공감이가 가는 답변 항목이 있었습니다: "민사사건 처리기간의 장기화 및 장기미제사건의 증가 문제는 대내외적 사법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 재판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한다고 하더라도 2,3월의 처리건수가 다른 시기만큼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전체적인 효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몇 년 전에도 배석기간 장기화와 관련된 설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설문회신이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주변 선,후배, 동료법관들은 극히 회의적인 입장이었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사건적체를 이유로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외부에 보여주기용 대책은 될지 모르겠으나, 일선 법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p>
<p>형사전담법관 도입 및 형사전담법관에 대한 대우 차별화(과격적인 성과급 지급)</p>
<p>형사재판처럼 기피하는 사무분담을 장기간 맡은 판사에게 다음 사무분담 선택에 있어 우선권을 부여 성과급의 차등지급을 사무분담에 따라 실질화 하여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p>
<p>형사재판을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외부에서 전입하는 경우 사무분담의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무분담 장기화는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희망이 경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를 원하면 그때그때 개별적인 인사를 실시하면 되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자체가 원칙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미제분포지수 악화 문제는 사무분담기간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p>
<p>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되기를 기대합니다.</p>
<p>현재도 사무분담 사이에 업무량 불균형, 스트레스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할 경우 어떤 법관은 선호 사무분담에서, 어떤 법관은 비선호 사무분담에서 장기근무를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됨.</p>
<p>비선호 보직인 형사업무를 3년 한 후 다음 사무분담에서도 불가피하게 형사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을 3년 연속으로 하는 것 자체도 법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최대 2년이 적정해보입니다. 다른 분야는 3년으로 늘려도 관계가 없으나 형사재판을 2년으로 하는 이상 인력 충원 문제로 다른 사무분담도 3년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p>
<p>지원 단위에서의 사무분담을 보면 희망 사무분담을 지원장에게 강하게 호소하는 법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묵묵히 일하는 법관은 결국 비선호보직으로 가게 되는 문제점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법관 간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여 근무 여건 및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p>



<p>과거 재판장 2년 보임 원칙인 시절에 사건처리율이 100%를 상회하고, 장기미제도 극히 적었던 기간이 장기간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건처리 장기화는 재판장 근무기간의 장단보다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민사, 형사, 가사, 신청 등 특정재판업무만을 담당하게 하고, 법원을 2, 3년 간격으로 옮겨다니는 현행 제도하에서 사무분담만 장기화하는 것은 사건처리의 신속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분담 장기화 논의를 통해 법원에게만 사건처리지원의 모든 책임이 있는 듯이 논의가 전개되는 것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건처리 지원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기수에 따른 연차, 소재지 재직 법관에 사실상 사무분담 우선권이 부여된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무분담기간 장기화는 저년차 법관(특히 재판장인 부장판사)에게 비선호보직을 할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함. 적어도 3년/4년 근무가 정착된 현 체제에서 2년 초과 근무를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
<p>행정부와 과산부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종전에 행정부 또는 과산부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일이 없도록 예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p>
<p>부장판사들의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형사보다는 민사를, 합의부보다는 단독을, 대등부보다는 일반합의부를 선호합니다. 결국 서울 소재 법원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정기 인사가 있듯이, 사무분담도 골고루 사무 분담시키는 차원에서 지나친 장기화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운 좋게 선호 보직(소위 꽃보직)을 맡을 경우 장기간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행운을 계속 갖게 되고, 운 나쁘게 비선호 보직을 맡으신 분은 선호 보직에 자리가 나지 않아 계속 비선호 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2년 담당 원칙으로 하되, 그 보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일 경우는 2년 원칙에 따라 다른 업무로 전환시켜 다른 신청자가 그 업무를 맡도록 하고, 반대로 그 업무에 대한 희망자가 없는데 다행히 종전 업무 담당 판사가 계속 그 업무를 맡겠다고 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며 기한 제한 없이(매년 그 업무 신청에 경쟁자가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재판장인 법관은 2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2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p>
<p>저는 아직 2년 재판장 원칙이 적용되는 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서(고정, 소년보호, 아동보호, 가정보호 신청, 소액, 개인과산 등의 업무만 해봄) 재판장 2년을 했을 때 사건처리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여 3년으로 연장하는 것 역시 어떤 이익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제도의 변화라도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시간이 지나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p>
<p>민사재판장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보직하고, 가능한 동일 법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아야 재판진행 및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2년 체제하에서는 1년 후 접수되는 사건은 이미 내가 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다만 형사재판은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민사에 비해 재판이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사무분담기간 증가</p>



<p>로 사건처리 효율성이 민사만큼 크게 늘 것 같지 않고, 재판진행의 부담이 커서 현재의 2년 기간에서 더 늘리면 형사 기피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2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호 사무분담과 비선호 사무분담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전 근무 법원의 사무분담'을 반드시 고려하여, 근무법원을 변경하더라도 민-형사를 번갈아 분담하게 해야 한다. 법관 인사이동시에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직전 법원에서 형사재판장을 했던 법관을 형사재판장만 공석이 되는 법원에 발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근무법원에서 3년 이상의 근무기간 내내 형사재판을 전담하도록 하고 그대신 다음 근무지 선택에 '최우선순위'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사전담법관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력법관 선발 시에 '형사전문 법관'을 따로 배정하여 선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임관 후 5년 정도 일정 기간 형사 재판만 하도록 하거나, 형사재판 희망법관이 부족한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재판 사무분담을 맡기는 형태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p>
<p>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 재판인력의 확충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p>
<p>매년 있는 대규모, 권역별 전보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만으로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임. 특히 규모가 작은 법원의 경우, 사무분담별 법관 사이의 형평에 매우 큰 문제가 생길수 있고(형사합의부 3년재판장, 형사합의부 2년 배석 vs. 민사항소부 3년 재판장, 민사항소부 2년 배석) 해당 보직의 근무기간을 마친 후의 다음 임지에서 해당 법관의 사무분담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방법은 사실상 없음(대법원장의 전보권한과 법원장(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지정권 및 해당 법원의 공석의 충돌) 일단, 권역별 전보 없는 서울중앙과 서울동서남북 법원을 시범으로 운영 후 전국적 확대를 고려하는 방안은 어떨까 함.</p>
<p>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 형사단독, 형사항소가 가장 기피 사무분담이고, 그 다음으로 민사합의가 기피대상임 연 2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조정하여 형사재판 담당 법관이 성과상여금으로 1,000만 원(반기별 500만 원)을 더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이러한 원칙을 확실히 정하고 사무분담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면 민사 등 비형사 담당 법관들의 불만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임 이를 통해 형사재판장 2년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고, 더 나아가 희망에 따라 3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담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생각됨 형사재판장 사무분담이 장기화 됨에 따라 민사 등 비형사 재판장의 사무분담도 아울러 장기화될 수 있을 것임</p>
<p>형사재판부 등 비선호보직에 대한 처우개선(사건배당 등 업무량 경감, 직무성과금의 차등지급)이 선행되어야 장기화에 대한 거부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이른바 비선호 업무(형사업무 등)에 관해서는 1. 희망에 따른 전문법관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2. 비선호 업무담당자에게 특별수당 지급 등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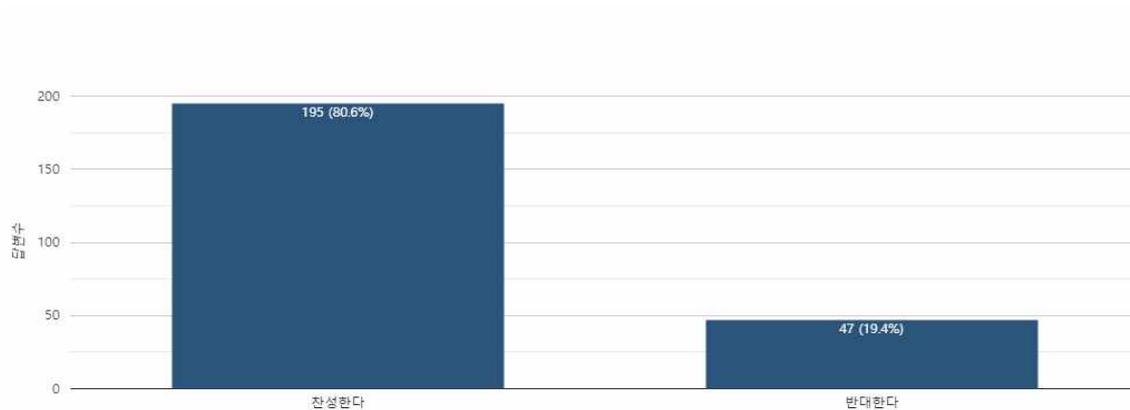
별첨3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관련>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설문대상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 ³⁾ 28021명
설문기간	2023. 4. 28. ~ 2023. 5. 3.
응답자 수	242명(0.86%)

1. 법관의 원칙적인 사무분담기간을 현행(재판장 2년, 재판장인 아닌 법관 1년)보다 장기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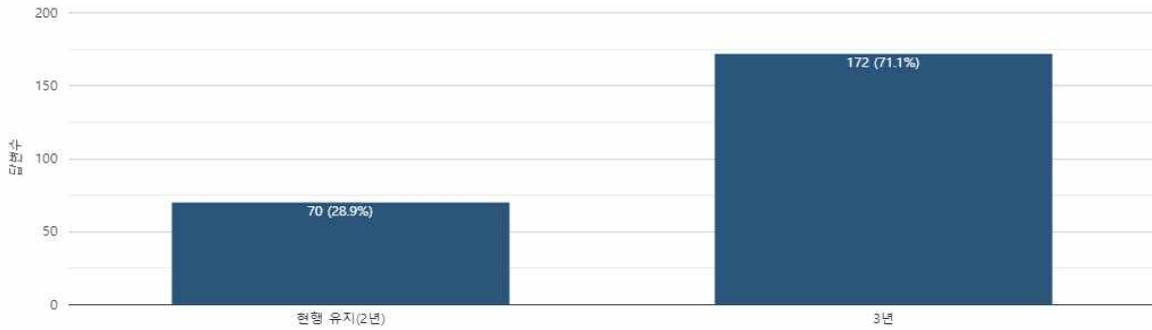
- ① 찬성한다 (195, 80.6%)
- ② 반대한다 (47, 19.45%)



2. 민사본안재판장의 원칙적인 사무분담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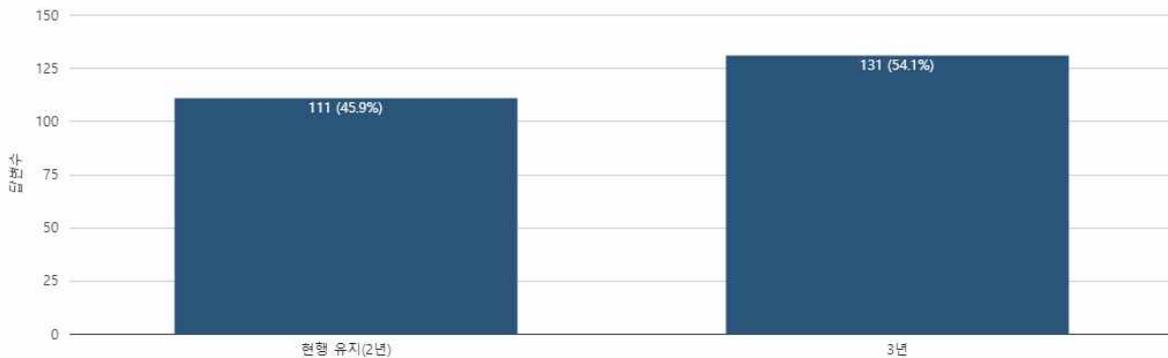
- ① 현행 유지(2년) (70, 28.9%)
- ② 3년 (172, 71.1%)

3) 휴업, 미개업 회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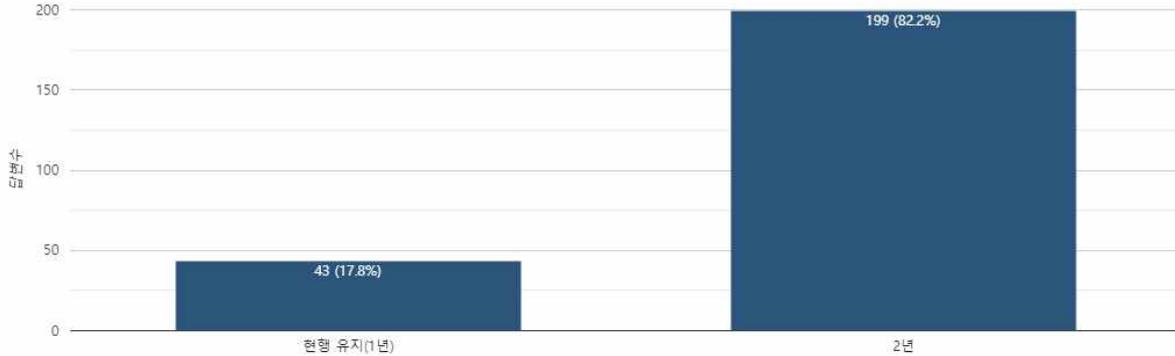
3. 형사본안재판장의 원칙적인 사무분담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유지(2년) (111, 45.95%)
- ② 3년 (131, 54.1%)



4.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의 원칙적인 사무분담 기간은 어느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유지(1년) (43, 17.8%)
- ② 2년 (199, 82.2%)



5.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와 관련하여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1	재판지연 문제 해결책
2	현재가 좋습니다
3	배석 2년씩이 좋습니다. 이동시기가 되면 재판 늘어지는 것 이해되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4	장기화 될 경우 한번 편향된 심증이 있으면 이를 돌이킬 수 없으므로 가급적 단기간으로 제한함이 좋음
5	재판이 장기화되므로 법관의 책임감을 위해 분담기간연장 필요
6	사무분담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재판부의 전문성이나 사건 진행 방식의 일관성은 제고될 수 있겠으나, 과도한 장기화는 인사이동이 적은 지역법관의 경우 그 폐해가 더욱 심해질 수 있을
7	원칙적인 사무분담 기간을 정하되, 개별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중간에도 사무분담 변경이 가능한 예외도 충분히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개별 법관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사무분담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사무분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8	재판장기화가 더 심해지는 요즘 현행제도의 기간은 너무 짧다고 보아 길게할 필요가 있다고 봄
9	작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현행 유지



11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부당 내지 위법 사유를 현실적으로 벗어날 방법은 재판부구성변경밖에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12	예전보다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1개 심급)이 너무 길어지고 있으며 1개 사건의 1개 심급이 1년을 넘는 일이 허다합니다. 심지어 2020, 2021년 사건이 2023년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그 원인 중에 법관의 사무분담 변경에 따른 지연도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이미 다음 변론기일이 3개월 뒤 썩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그 기일에는 재판부 구성변동으로 기록검토가 필요하여 사실상 변론갱신 및 차회 변론기일 지정만 된채 또 1,2개월이 그냥 지나며 사실상 본격적인 재판은 4월부터 12월말까지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법원 사무분담 변동의 기간 차이를 적어도 동일한 재판부가 1개 사건의 당해 심급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현재보다 여유있게 운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13	재판부에 사건이 많아져서 1심이 끝나는데 3년이 걸리는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이 결론을 내주신다면,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	배석판사도 동일하게 2년으로 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15	특히 민사사건에서 감정, 사실조회 등으로 인하여 사건의 장기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만 사건이 길어지면 중간에 주심(배석)이나 재판장이 변경되어 새로운 법관에게 복잡한 사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민사사건에서만만큼은 사무분담 기간이 보다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	사건이 대개 장기화되는 민사의경우 너무 단기간의 사무분담기간은 오히려 비효율적 일 처리가 되게할 가능성이 높아보임.
17	배석이 1년만에 이동함으로 인해 재판지연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함
18	현행 기간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판사가 소속 법원을 옮기더라도 그가 분담하던 것과 동일한 분야의 사무(즉 민사면 민사, 형사면 형사)를 계속 담당하는 방안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19	재판의 충실한 심리와 법관 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가 필요하다고 봄
20	전관예우 방지 등 차원에서 사무분담장기화에 반대
21	재판부 사무분담 기간 현행보다 더 장기화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2	소송계속 중 재판장 및 배석판사 변경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 변경 후 기록 확인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여 기일이 잡히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3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이 늘리는게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24	재판부 분담의 경우 각 판사들의 의견보다 보직이 있는 재판장 등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배석판사의 경우 다양한 재판부를 담당하는 대신 해당 재판장 의견에 따라 원치않는 재판부에 장기배정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각 판사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판사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형평에 맞는 업무분장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됨)
25	근무기간만 장기화만 될하나? 3년으로 늘리면 3년 근무하는 동안 천천히 처리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차라리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는 법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것임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	장기화 필요합니다.
28	재판의 장기화는 사무분담기간의 장단이 문제가 아니다. 사무분담기간을 늘린들 현재의 법관인사시스템하에서는 사무분담기간이 만료될 무렵이 되면 어차피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미루는 경향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엄격한 법관업무평정을 통해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외에는 달리 실효적인 방법이 없을 것이다.
29	장기화된다고 해서 사건처리 효율이 올라가지는 않을 듯
30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
31	재판의 일관성
32	가사소년전문법관처럼 특수한 분야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33	변론갱신이 너무 잦다고 느껴집니다. 안정화시켜서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34	공판심리 참여법관의 판결선고가 실체에 그나마 부합합니다.
35	충분한 심리가 요구되는 사안에 관하여 장기간의 사무분담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36	재판이 종결되지 않은 채 혹은 판결선고만 앞두고 법관인사이동으로 변론이 갱신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심리가 충실하지 않게 됨
37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관 변경으로 인해서 사건이 더 장기화되고 있음
38	법관들의 분담 사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
39	기간이 짧다보니, 일부 판사님들 중에는 사무분담기간 종기가 다가오면 사건 종결을 안 하고, 다음 재판부에 넘겨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 같습니다.



40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배당 시점부터 해당 사건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내리지 못한 채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요즘은 재판이 지나치게 늘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분담 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 사이에 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무분담 기간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41	재판절차의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42	법관의 수를 늘려서 재판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43	지역법관 확대
44	투명성과 부패방지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아도 집중하여 사무를 보고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5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근무기간 연장이 바람직
46	재판 지연 등의 문제는 사무분담 기간의 문제가 아닌 법관 개개인의 사명감과 성실성과 관련된 문제로 보임.
47	소제기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기간이 비교적 장기화됨에 따라 가급적 증인신문 등 주요 증거조사 절차에 참여한 법관으로 하여금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48	현행제도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49	법관들의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여서 사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게 필요합니다.
50	매년 말경 또는 초경이 되면 재판의 지연을 노리는 측에서 법관인사철 즈음으로 변론기일을 끄는 경향이 있고, 잦은 재판부 변경은 사건의 실체를 잘 모르는 법관으로 하여금 판결을 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51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기일변경, 소송지연 사례가 너무 많음.
52	법관으로 어느 정도 근무한 시점에 민사, 형사 등 업무영역을 선택해 가급적 퇴직시까지 같은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3	현재와 같이 재판 진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변론갱신 등으로 인한 사건의 심도 있는 심리에 지장이 종종 발생하므로, 현재에 비해 다소 사무분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4	재판부 또는 법관이 너무 빨리 교체되어, 변호사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변론활동이 일체성 및 연속성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장기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



	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5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적정한 사무분담 기간 필요함
56	매우 드물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편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바뀌어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실제로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심판사가 같은 재판부에 계속 근무하면서 3년 이상 사실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재판부 변경으로 신속히 종결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분담의 장기화는 이러한 기대마저 가질 수 없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7	한 사건에 관한 재판이 예전에 비해 많이 길어지고 있어 사무분담 기간 또한 연장되는 것이 사건처리 연속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8	사무분담변경을 악용하여 까다로운 사건을 후임법관에게 밀어버리고 도망가는 법관들, 정말 꼴불견이고 창피한 줄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59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함
60	재판부 변경을 이용하여 사건의 진행을 늦추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61	선호하지 않은 재판부를 담당할 경우 다음 사무분담시 우선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에게도 안식년을 주어서 재충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62	연말연초 2주에 쉬고, 여름에 2주 쉬고, 인사이동을 즈음하여 기록을 두고 가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신속하게 재판을 해 주세요
63	현행 사무분담 기간은 그 기간이 짧아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재판부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건의 충실한 심리가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4	어떻게 바꾸든 재판 장기화 문제가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65	법관 인사이동 및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사건의 지연이 지나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있겠다고 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을 자제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인사이동 및 사무분담 변경은 이동을 원하는 법관에 한해서 이루어진다면 불편함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66	1심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법관의 사무분담기간 역시 연장하여 가급적 오래 심리하신 법관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67	사무분담 기간이 동일함에도 과거보다 현재의 재판지연이 두드러지고 악성 미제 사건이 증가하는 현상은 '사무분담 기간'이 아닌 다른 요인(예 :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전면 폐지, 일부 법관의 직업윤리 문제, 사법행정권자의 사건관리 문제 등)에 의한 것일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사무분담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토착비리 등)을 고려할 때 사무분담기간의 장기화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대책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무분담 기간의 장기화에 반대합니다.
68	재판은 보통 길어지는데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신규 사건 파악 등 문제로 재판 진



	행이 더 느려집니다.
69	특정사건의 재판장 사무분담 기간을 통상적인 2년을 경과하는 예외에 관하여 규칙을 정하고, 그 이외 예외를 두지 않도록 운영한다.
70	문제 생기지 않는 이상 더 길게 못할 이유가 뭔가..
71	사건 장기화에 따른 책임있는 재판 수행을 위해 사무분담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72	자주 변경되는 재판부로 인하여 변론이 갱신되고, 임기만료 시점 즈음하여 계속해서 재판을 연기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재판 장기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73	현행보다는 조금 장기로 근무했으면 합니다.
74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배석판사의 잦은 변경으로 변론/공판절차 갱신 때문에 매년 정기인사 몇 달 전부터 변론을 종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순차적으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75	코로나 19도 종식되어 가고 있는 만큼, 최소한 코로나19 이전의 사건진행속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76	현재의 근무기간은 사건 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다소 적으므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문제 있음
77	부장판사의 경우 한 법원에서 3-4년 근무하는 것이 보통인데 재판장을 3년 이상 하게 되면 합의부 재판장을 못하는 부장판사가 너무 많아 지므로 재판장은 2년만 하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 예전에는 배석판사가 재판장으로부터 재판을 배운다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다양한 선배로부터 배우는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배석판사 1년마다 다른 재판장과 일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등재판부가 많이 생겼으므로 이런 의미는 약해진 것 같습니다. 재판의 연속성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즉 하나의 부에 판사 3명을 순차로 배치시켜 배석으로 1, 2년을 근무하고 마지막 해에 재판장으로 1년 일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재판의 연속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	재판부 변경시를 이용하여 판결선고를 미루거나 재판을 지연하는 경우가 흔하여 개선이 절실히 요망됨
79	사건 파악한듯하면 떠남. 각기 다른 판사님들이 같은 증거를 증거조사만 해마다 3번째 함.
80	사무분담 기간이 짧으면 사건 파악도 다시 해야 하는 등 재판운영의 비효율이 같습니다. 기간을 좀 더 늘리는 것도 효율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81	자주 바뀌면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82	재판부 변동으로 인한 재판의 장기화 방지가 필요함
83	재판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사무분담이 단기화 유지로 법관이 자주 바뀌면 기존 재판진행 중 사안들을 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장기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증인



	신문 등)
84	현재 단독과 합의를 불문하고 한 사건이 소제기에서 결심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는 찾기 힘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건의 중간에 판사가 변경되는 사정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행 사무분담 기간은 다소 짧다고 생각됩니다.
85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대리인과의 관계 등으로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드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재판장의 경우 사무분담기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법원 정기인사 시기에 교체할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86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라 생각지 않음. 겸임 가능한 사무확대필요
87	사무분담 기간에 관해서 현행 유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88	사건의 공정한 처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의 접근을 위해 현행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89	현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법원 연속근무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사무분담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동일법원 연속근무기간을 늘린다면 사무분담기간도 연동하여 늘릴 필요가 있겠으나, 법관 상호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일법원 연속근무기간(특히 수도권 법원의 경우)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0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심리를 시작한 재판부가 그 심리를 실질적으로 마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무분담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1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간 장기화가 필요합니다.
92	재판중 재판부변경에 따른 소송지연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93	민사사건은 보통 3년안에는 끝나고, 형사사건은 2년안에는 끝나는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사건을 시작한 재판부에서 사건 마무리하는게 합리적이라면 그 기간에 맞는 재직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4	업무효율성 향상
95	장기화 되는 사건이 꽤 있는데 중간에 계속 변론절차 갱신이 되며 지연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6	현행보다 장기화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97	장기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98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이 3년, 2년으로 하되, 그 보다 짧은 기간에도 사무분담을 바꿀 수 있는 예외가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99	현행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00	사무분담기간은 적절하나, 재판진행이 너무 더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간을 늘려도 진행이 더디면 마찬가지로 민사 제1심을 2년씩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01	현재의 사무분담 기간은 소송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소송기간의 장기화라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사무분담 변화로 인한 무의미한 변론재개(단순히 변론의 갱신을 위한 것), 및 판결의 지연(소송이 상당기간 진행된 뒤 사무분담이 진행되는 경우)등 단점을 초래하고 있는바, 제시된 안과 같이 사무 분담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02	재판장 또한 재판진행만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3	인사이동철이 되면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버리거나 종결예정이었던 사건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속행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많았음.
104	재판부 변경으로 인해서 매년 연말, 연초가 되면 이미 판결문 써야 할 사건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 종결이 안 되고, 3월이나 4월경 변론 갱신되면 새로운 재판부가 다시 검토해야 해서 판결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재판장, 배석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이 동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5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무분담정책이 필요함
106	재판부 변경된다고 매년 2월 기일 안 잡히고 하는 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사무분담이 중요한게 아니라 법관들의 자질을 제발 검증해 주기 바람. 지금 10년에 한번 하는 재임용 판단은 5년으로 줄이던가 2년으로 줄이던가. 지금 수준으로는 1년도 긴 거 같다.
107	다소 복잡하거나 곤란한 사건인 경우에는 변론 내지 공판을 순연시켜서 다음 재판부로 판단을 떠넘기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아무리 메모를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재판부가 종래 진행된 변론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재판부에 의한 결론을 당사자가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분담기간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면 이런 폐단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08	기간을 늘릴 필요 있음. 인사철 전후1-2달 빼면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음.
109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7장기적으로 분담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되 합의부는 부장과 배석의 기간을 동일하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함.
110	기존 제도가 타당함. 너무 장기화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 보장이 어려울 것
111	재판도중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당사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변호사들도 새로운 재판부에서 심증이 바뀌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현행보다는 좀 더 장기로 사무분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2	배석판사(주심) 1년주기로 인해 2월말 재판 진행 마비, 3월 변론갱신등 절차지연과 재판비효율화가 심화되는 경향



113	전문성 증대 필요
114	너무 잦은 재판부 변경으로 재판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115	변론갱신되어 불필요한 기일이 발생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생각하면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가 바람직해보입니다.
116	재판장은 늘리고 배석은 현행유지
117	지나치게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재판 당사자는 물론 소송대리인에게도 아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118	배석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변론 속행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장은 3년, 배석판사는 2년으로 연장하여 재판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119	2월이 되면 의례 기일 공전되고, 갑자기 재개되고 조정 회부되는 등 사건 진행이 지연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무분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20	지나치게 짧은 사무분담 기간으로 사건과약의 어려움, 사건의 장기화 등 부작용이 많음
121	단독이야말로 현행보다 더 장기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주 바꿉니다.
122	사무분담기간 장기화가 재판 장기화를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123	재판의 기본적인 진행 기간이 장기화되는 만큼, 그 과정을 지휘하지 않은 법원에 의한 판단이 다소 모순적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124	형사 사건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 관련 사건의 쟁점과 기록이 방대 하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성원의 변동 없이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에 찬성합니다.
125	사무분담기간을 점차 장기화하고 늘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126	사무분담기간을 장기화하더라도 변론기일을 1년에 2, 3회하거나 추정으로 기일을 지정 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사무분담을 하게 하더라도 무의미하게 되므로, 재판을 장기간 미루는 사례가 없도록 법원 내부의 체크장치가 필요합니다.
127	재판장의 임기중 소장이 제출된 경우 기존 재판부가 이미 충분한 심증을 형성하였음에도 통상적 근무기간으로 판결하지 않고 다른 재판부로 이동하고 새로운 재판부는 사건을 잘 알지 못하여 오판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니 장기화가 필요함
128	장기화 되면 공정한 재판을 해할 우려가 커진다고 생각됨
129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분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합니다.
130	현행 유지를 지지합니다. 장기로 바꾸면 사건지연만 더 늘어날 것 같아요.



131	가급적 장기가 좋겠음
132	형사재판 외에는 판결선고까지 2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사무분담기간을 1년 정도 증가하여 3년,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133	민사전문과 형사전문으로 나눌 필요 있습니다.
134	현행 법관 사무분담 기간이 지나치게 정해져 있어서 소송 진행 중에 재판부가 교체되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사법감시의 관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무분담기간을 정해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짧은 사무분담기간 확정은 재판지연과 졸속 재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사법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행 사무분담기간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35	잘 처리해주세요
136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에 따라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도 연장되는 것이 연속적인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137	현행은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사무분담기간이 적정기간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138	재판부 변동으로 재판이 장기화되고 실제과약이 부정확해지는 단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139	재판부가 변경될때마다 사건 진행이 너무 더뎠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의뢰인들의 고통이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140	재판부 사무분담을 장기화한다면 한 재판부가 문제가 있어도 오래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고민도 필요함
141	업무효율성을 위해 주심판사의 사무부담기간을 늘이면서 재판절차 중에도 진행과정을 파악할수 있게 사무부담의 적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42	장기화에 찬성합니다.
143	한 사건의 민사재판 기간이 비교적 장기여서 사건 도중 법관 인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함
144	사무분담규정에 사무분담 기간과는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이 동시에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적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필요
145	현재 1년 동안 진행하는 재판 속도가 매우 느려졌다고 생각함. 대부분 소송이 1년이 넘음
146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재판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보다 분담기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7	사건처리기간 길어지면서 법관들이 인사이동기간에 어려운 사건 마무리 안짓고 다른 재판부로 도망가버릴 궁리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 피해가 큼니다. 3년도 짧습니다.
148	재판부 변경으로 소송지연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고려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149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사건 특성상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이 변동되는 경우 사건이 더욱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에 동의합니다. 형사의 경우 현행과 달리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모르겠습니다.
150	송달 문제 및 당사자 일정 조율로 인하여 1개의 심급 진행 기간은 통상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재판부가 변경되면 사건진행이 더욱 늦어지고, 그 이전에 진행한 내용, 분위기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경제를 위해서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1	최근 몇 년 간 법원의 사건처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법원의 제도 개선 의지를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2	소송제기부터 판결까지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판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전혀 엉뚱한 결론이 도출되는 등 사건 진행의 일관성이 없어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이 좀 더 연장되었으면 하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배석 판사의 경우에는 사건의 연속성과 일관성, 그리고 사건 진행과 검토에 대한 성실성을 고려하여 현행 1년 보다는 연장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3	- 형사의 경우 증인신문을 진행한 판사가 원칙적으로 선고를 책임질 수 있도록 내부원칙을 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 민사의 경우 기간을 늘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소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공격 방어 방법의 집중에 대해 소송지휘를 잘 해주시는것이 중요할듯 합니다.
154	매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소송이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점은 시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5	현행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56	단기간의 사무분담 기간으로 인한 민형사 재판의 지연 방지를 위하여 기간 장기화 필요
157	사무분담기간 1년은 너무 짧아 매년 2월이 되면 재판지연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니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58	재판부 변경 등을 이유로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사건이 많음. 사무분담 기간 등 조정 필요하다고 생각됨
159	사무분담 기간이 이렇게 정해진 원래의 취지를 잘 살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적체로 소송이 빠르게 안 끝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사무분담기간을 늘릴 것이 아니라, 판사 수를 늘리고 법원 수도 늘려야 할 것입니다.
160	현행유지가 바람직
161	법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62	일본 동경지방법원 지적재산권부의 근무기간은 7년이랍니다.



163	사무분담 기간이 짧아 연말이 다가오면 재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164	재판부의 사건 적체가 심화되고 사건 처리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관의 사무분담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165	사건 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잦은 교체는 사건처리를 더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담 기간을 늘린다면 사건 떠넘기기 식의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166	현행보다 기간을 늘려 안정적으로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67	2년에서 더 장기화할 필요성이 없다. 업무처리방법과 능률은 실력과 의지이지 기간의 장단과 큰 상관이 없다고 본다.
168	2년 사무 분담 재판부와 3년 사무 분담 재판부를 공존시킨 후 효과를 보고나서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169	재판진행도중 법관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70	장기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71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면 좋겠습니다.
172	국민의 관점에서 충실한 심리가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한 법관(배석 판사 포함)이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무분담을 유지하는 것에 더 높은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판사님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제도를 살펴보고 현재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173	사건 던지고 도망가는 판사 엄벌!
174	현재보다 기간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175	재판사무분담 기간을 좀 더 연장하면, 좀 더 깊이있는 판결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176	
177	재판부 갱신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 심합니다.
178	배석판사의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최소 2년은 되어야 재판진행 및 판결문 작성의 일관성이 유지 될것으로 보임
179	아무리 서면으로 진술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공판 또는 변론조서에 드러나지 않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판단되는 전체 취지라는 것은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사재판은 1-2년 진행되는 게 부지기수라 심증을 한껏 심어준 배석판사나 재판장의 변동으로 선고시점에 재판부가 변경되면 제대로 재판을 진행한 것 같지 않고 의뢰인의 불만도 큼니다.(형사의 경우 증인신문 진행했던 재판부와 선고 재판부 다름, 불신 발생할 수 밖에 없음). 형사는 적어도 2년, 민사 배석 2년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됩니다.
180	현 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81	생각보다 재판이 길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1, 2회 변론기일 때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사실조회 등 증거신청을 하거나 청구취지금액을 변경하게 되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 또 다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어 비효율적입니다. 기간을 좀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182	현재 기간은 짧은 듯 합니다.
183	사건 종결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됨
184	희망자에 한하여 사무분담 기간을 조정하거나 일부 인원에 한해 시범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면 좋을 듯함.
185	재판장뿐 아니라 배석판사도 기본적으로 2년 유지
186	법관의 사무분담 기간이 단기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빈번히 법원의 인사이동 시기를 겪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사건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어져 그 피해가 당사자들에게 이전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이 현행보다 장기화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87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무분담기간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음
188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게 바람직
189	현행보다 길어지는게 신속한 재판 받을 기회를 보장한다고 생각함.
190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뢰인과 대리인의 생각보다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제도상의 이점보다 장기화를 통한 실익이 더 크다고 봅니다.
191	근무기간 장기화가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2	일부 책임감 없는 법관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사건의 시간을 질질끄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